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2985-01

농자재 분야(농약)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조정기구 설치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2019. 12.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농림축산식품부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농자재 분야(농약)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조정기구 설치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년 12월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차 례 >

제1장. PLS 시행과 농약 관련 분쟁 발생 현황	5
1. PLS 시행 후 부적합률 및 농약 관련 분쟁 발생 현황	5
2. 잔류농약 관련 친환경농업 분야의 분쟁 발생 실태	8
3. 잔류농약 관련 행정처분에 따른 심각한 갈등사례	11
4. 농약 관련 분쟁의 구조와 특성, 주요 유형	17
제2장. 농약 관련 분쟁처리 현황과 사례	22
1.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분쟁조정 현황	22
2. 행정심판위원회의 친환경인증 관련 분쟁 심판	29
제3장 관련 분야 국내 분쟁조정기구와 조정제도 현황	33
1.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	33
2.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와 방법	40
제4장. [해외사례] 주요 선진국의 농업·농약 분야 분쟁해결제도	45
1. 미국의 농약 관련 분쟁 발생 실태와 분쟁해결제도	45
2. 캐나다·호주의 농약 분야 분쟁조정기구 실태	51
3. 유럽의 농업 분야 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 실태	57
4. 일본의 농약관리제도와 분쟁조정제도 실태	57
제5장. 농약 분야 분쟁조정기구 설립 및 운영 방안	59
1. 농약 분야의 전문적 분쟁조정기구 설치 필요성	59
2. 농약 분야 분쟁조정기구의 역할과 분쟁처리절차	61
3. 농약 분야 분쟁의 효과적 해결 접근법	67
4. 농약피해 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 방안 비교검토	70
5. 농약 분야 분쟁조정기구 설치 위한 법규 제정방안 비교검토	77
제6장. 농약 분야 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 규정(안)	81
1. 농약관리법 개정으로 분쟁조정기구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안	81
2. 대통령령 및 훈령 개정에 의한 추진 방안	94
제7장. [요약·결론] 농약피해 분쟁조정기구의 설치·운영안	108

제1장. PLS 시행과 농약 관련 분쟁 발생 현황

- 2019년 1월부터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이하 PLS)를 전면 시행하게 됨
- 이를 통해 농산물의 안전성과 토양의 건전성이 크게 향상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향후 농업 현장에서 비의도적 오염 등 농약 관련 분쟁이 빈발하게 될 것으로 우려
- 그에 대한 중요한 대책 중 하나로, 농약(농자재) 분야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 분쟁조정기구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게 되었음
- 이에 따라, 우선 PLS 제도 시행 전후 농약 관련 분쟁의 발생 현황 및 향후 추이와 가능성을 살펴보고, 농약 관련 분쟁의 주요 유형과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효과적 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 방안을 모색할 필요

1. PLS 시행 후 부적합률 및 농약 관련 분쟁 발생 현황

- PLS 시행으로 인해 안전성 검사에서 잔류농약 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는 농산물 건수가 전보다 크게 증가한다면, 그에 따라 농약(농자재) 관련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커질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PLS 시행 전후 농산물 안전성 조사결과를 비교하면 PLS 시행에 따른 농약 관련 분쟁의 증가 여부 및 발생 양상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게 될 것임
- PLS 제도를 시행하기 훨씬 전인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산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결과 부적합률은 <도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도

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1.5% 내외의 수준이었음

<도표 1> 국내산 농산물 부적합률 연도별 추이 (2012~2017년)

연 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부적합률	1.5%	1.4%	1.3%	1.4%	1.5%	1.9%

- 2019년 1월부터 PLS 제도를 전면 시행한 이후, 금년 상반기 국내 농산물 부적합률은 1.2%로 조사됨
 - 이는 2012~2017년 6년간 평균 부적합률 1.5%에 비해 0.3% 포인트 감소한 수준이며, 직전 연도 동기간(2018년 상반기)에 비해서도 크게 줄어든 수치임
- PLS제도 도입으로 잔류농약 기준이 크게 강화되면서 부적합률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는 당초의 우려와 달리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도표 2> PLS 시행 전후 농산물 부적합률 비교 (2018년 - 2019년 상반기)

(단위 : 건, %)

구분	2018년 상반기			2019년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조사	부적합		조사	부적합		부적합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생산단계 (농관원)	8,698	220	2.5	9,019	196	2.2	↓ 24	↓ 0.3%p
유통단계 (시·도, 농관원)	26,817	294	1.1	27,161	224	0.8	↓ 70	↓ 0.3%p
수입단계 (지방 식약청)	7,052	50	0.7	6,049	61	1.0	↑ 11	↑ 0.3%p
합 계	42,567	564	1.3	42,229	481	1.1	↓ 83	↓ 0.2%p

- 농약 사용량도 PLS 제도 시행 이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금년 5월말까지 농약 생산량과 출하량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8% 및 1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
- 지역 차원의 통계에서도 유사한 추세가 확인되고 있음
 - 한 예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집계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수원, 구리, 안양, 안산 등 4개 검사소에서 진행된 전체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4,518건 중 ‘부적합’으로 드러난 건은 45건으로 부적합률은 1.0% 수준이었음.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부적합률 0.9%와 거의 비슷한 수치임
- PLS 도입으로 등록된 농약 이외의 농약 사용이 원천 금지되고, 품목별 잔류농약 허용기준도 강화됨에 따라 부적합률이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부적합률이 증가하는 현상은 벌어지지 않고 오히려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PLS 제도 시행에 따라 농가의 농약 사용 관행도 그에 맞춰 바뀌어가고 있으며 PLS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로 해석됨
- PLS 시행 이후 농산물 부적합률이 높아지지 않은 것처럼, 농약 사용과 관련한 농가 간의 분쟁도 당초 예상과 달리 현재까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PLS 시행 이후 비의도적 오염 관련 분쟁이 제기된 사례는 현재까지 전혀 없는 상태이며, 확인되지 않은 “비산 오염 주장” 관련 민원이 일부 제기된 정도
- 이와 같이 PLS 시행 이후 현재 상태에서 “분쟁”으로 분류할만한 사례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분쟁 수준이 아닌 ‘단순 민원’ 성격의 문의나 불만, 문제제기는 적잖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시·군 농업기술센터, 도의 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고객지원담당관실을 통해 접수 또는 파악되는 PLS 관련 민원은 크게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됨
 - (1) PLS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사용 불가하기 때문에 “쓸 농약이 없다”는 불만
 - (2) 무슨 농약을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불만
 - (3) 이전에 썼던 농약이 토양에 남아서 축적돼 후작물에서 검출되는 경우의 문제
- 위와 같은 민원 사항은 기후변화에 대비해 PLS에 등록된 농약 목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노력 등을 통해 해소해나갈 수 있는 문제임
- PLS 시행 후 항공방제 등 비산에 의한 비의도적 오염 사례가 많을 것으로 우려됐으나 실제로 문제가 된 경우는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았음
 - 이는 PLS 시행에 대비해 ‘항공방제 매뉴얼’을 개선-보완하는 등 농림부와 산림청의 사전 예방적 조치가 주효한 것으로 평가됨
- 농약사용 및 농산물 출하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여름철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볼 때 PLS 제도는 국내 농업현장에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관련 분쟁 또한 당초 우려했던 만큼 많이 벌어지지 않는 것으로 잠정 결론

2. 잔류농약 관련 친환경농업 분야의 분쟁 발생 실태

- 잔류농약 검출 문제로 분쟁이 벌어질 소지가 더 많을 것으로 우려되는 쪽은 친환경농업 분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해마다 펴내는 『유기식품 등

인증통계』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친환경인증 취소처분을 받은 농가(농장 포함)는 매년 2,500~3,000건 안팎에 달하며, 그 중 83.8%라는 압도적 비중을 점하는 취소사유가 “농약사용 기준위반”이었음

<도표 3>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 취소처분 현황(처분원인별 분포)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행정처분 전체 건수	3,126	2,734	2,474	2,868
농약사용 기준위반	3,031 (96.7%)	2,341 (85.7%)	2,059 (83.1%)	1,952 (68.1%)
경영자료 기준위반	1	181	2	12
기타 기준위반	94	212	413	904

- 친환경인증 농가에서 농약사용 기준위반으로 인증 취소처분을 받게 된 데는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비산에 의한 비의도적 오염이 적지 않은 비중을 점할 것으로 추정됨
- 농관원이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한 행정처분 목록에 의하면, 지난 7~10월 4개월간 사유가 명기된 행정처분(시정명령) 중 “비산에 의한 오염을 방지할 대책을 세워 실행할 것”을 요구하는 처분은 1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 그 중 일부 사례와 명령문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음
 - 8. 14 강원도 횡성군. 도라지 등 유기농산물
시정명령 : 인증포장 주변에 농약살포 금지토록 인근 주민과 협의, 적발된 필지 등 화단 접경지대에 차단막과 인증포장 팻말 설치
 - 8. 20 강원도 인제군. 느타리버섯 무농약농산물
시정명령 : 비산에 의한 오염으로 비산방지대책에 예방을 세우며 실행할

것(표고버섯은 새로운 배지를 들어갈 때까지 인증표시 사용 중지

■ 8. 20 강원도 양구군. 무 등 무농약농산물

시정명령 : 인근 농지에서 인증 필지로 비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비산방지 대책을 세워 실행할 것

■ 10. 1 강원도 고성군 등 4개 농가. 벼 무농약

시정명령 : 비산에 의한 오염방지대책을 세우고 실행할 것

■ 10. 2 충남 논산시. 딸기 무농약농산물

시정명령 : 비산에 의한 오염방지대책을 세우고 실행할 것

■ 10. 25 강화도 약썩농장

시정명령 : 옆 농가로부터의 농약 비산 방지대책을 세울 것

○ 이러한 시정명령제도 자체는 그동안 친환경 농업인들이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억울하게 ‘취소처분’을 받는 문제 때문에 최근 도입된 제도 개선책임. 그러나 완벽한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음

- 1차 위기는 이와 같은 시정명령으로 넘어가더라도 비산방지대책이 완벽하지 못하면 2차에는 인증 취소처분 등을 당할 수 있기 때문

○ 이러한 문제의 실상은 현장에 있는 관계자들의 육성을 통해 거듭 확인되고 있음

○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의 박종서 사무총장은 2017년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에서 “최근 비산, 농자재에 의한 오염 등 비의도적 인증 위반에 대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기준치 이상일 경우 인증 취소 처분이 내려져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비의도적 인증 위반 농가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¹⁾

○ 2019년 3월 국회에서 열린 <친환경농업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자(유병덕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장)는 다음과 같이 현장

1) 박종서, 친환경농업의 현실과 앞으로의 방향 -친환경인증제도 개선을 중심으로(2017년 11월 토론회 발표자료)

의 사례들을 소개한 바 있음

“자기가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농약성분이 검출되는 사건은 생각보다 자주 등장한다. 최근에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들이 겪은 일을 살펴보자.

연천의 농가는 인근 과수원에서 비산된 농약으로 인증이 취소되고 학교 급식으로 출하하지 못하게 되었다. 김포의 농가는 읍사무소가 항공방제를 하는 바람에 방제 지역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인증이 취소되었다. 시흥의 농가는 계분퇴비에 들어있던 농약성분으로 학교급식에 출하를 정지당했다. 수원의 농가는 종자에 들어있던 농약성분으로 인해 학교급식 출하를 정지당했다.

정읍에서는 시당국이 가로수에 농약을 뿌리자 인근의 친환경농가가 인증을 취소당했다. 청주의 농가는 수년 전에 생산이 중단된 농약 성분이 토양에서 검출되어 인증이 취소되었다¹¹⁾. 어떤 지역에서는 보건 당국이 연무형 모기 방제약을 뿌렸는데, 그 성분이 검출되어 인증이 취소되었다.

친환경농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되었을 때에 그 원인 중에는 생산자가 직접 살포한 경우도 있겠지만, 필자는 직접 살포한 경우보다 간접적인 환경요인이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한다.”²⁾

○ 친환경농업인들이 직면하는 이러한 현실은 향후 농약(농자재) 관련 분쟁 발생에 대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예고해줌

1) 친환경 인증 취소처분 문제를 둘러싸고 **농업인과 공공기관 간 분쟁**이 많이 벌어지게 될 것이란 점

2) 비산, 비의도적 오염 문제로 **친환경 농업인과 이웃의 관행 농업인 간 갈등**이 계속 잠재 상태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미구에 다양한 형태로 터져 나오게 될 것이란 점

3. 잔류농약 관련 행정처분에 따른 심각한 갈등사례

○ 비의도적 오염 등의 문제로 친환경인증이 취소되게 되었을 때 당사자

2) 유병덕, 친환경농업 정의 개정에 따른 인증제도 개선 방향 국회 토론회 발표자료(2019. 3. 18)

들이 겪게 되는 피해가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지, 그런 행정처분이 당사자들에게 어떤 의미로 와 닿는지 제대로 파악해야만 그로 인한 분쟁의 해결방향을 제대로 모색할 수 있음

- 친환경인증 취소처분을 받은 농업인 3인의 사례를 통해 그 실상을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음

□ 사례 1. 평생 쌓아온 자부심이 무너진 70대 친환경농업인

“지난 8월 경북 모지역에서 지난 20여 년간 유기농업을 실천하였던 70대 농민으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인증을 갱신하려고 검사용으로 3,000여 평의 유기농지 중 하우스 한켠 5~6평에 열갈이를 심어 농관원 직원이 시료로 채취해갔는데,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어, 인증이 취소될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이었다. 시료검사를 위해 심은 열갈이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된 것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지만, 말할 수 없는 자괴감을 느끼게 한 것은 지난 수십여 년 동안 유기농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마을 전체가 친환경농업을 하도록 이끌어왔을 정도로 신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농관원에서는 본인을 죄인 취급하듯이 범법자 취급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억울해서 농관원에게 다시 검사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직접 시료를 재검사하여 불검출로 나온 성적서와 영농일지를 비롯한 각종 서류, 농자재구입 증명서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 청문회를 하였지만, 최초 검출된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 이상이어서 결국 인증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최근 나에게 다시 전화가 와서 “내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농업을 지키고, 소비자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한다는 사명감으로 평생을 살아왔는데..... 이렇게 죄인 취급받는 상황이 되니, 내가 왜 친환경농업을 해 왔는지 후회 된다.”고 말끝을 흐리며 전화를 끊었다.³⁾

□ 사례 2. “농약 안 뿌렸는데...” 친환경·유기농인증 취소 날벼락

“10여년 동안 공들여 유기농 채소를 생산하는 밭에 어떻게 농약을 뿌릴 수 있겠습니까? 농약은 한 번도 친 적이 없는데 인증 취소까지 당해 너무 억울함

3) 박종서, 친환경농업의 현실과 앞으로의 방향 -친환경인증제도 개선을 중심으로(2017년 11월 토론회 발표자료)

니다.”

양평군 지평면에서 4000m²의 친환경(유기·무농약) 채소를 재배하는 이균환(52)씨는 지난 7월15일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다. 전남 목포시 L마트에서 판매되던 이씨의 샐러리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돼 유기농 인증을 취소한다는 내용이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목포·신안사무소 직원이 수거한 이씨의 샐러리에서 검출된 농약은 살충제 성분인 에토펜프록스(0.1mg/kg)와 클로르피리포스(0.2mg/kg)였다. 이 살충제는 주로 과수원에서 나방류 등을 방제하는 약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친환경농법으로 엽채류를 재배해 오고, 2007년에는 유기농인증을 받아 등록된 친환경제재만 사용했을 뿐 화학농약은 절대 사용한 적이 없다”며 “더욱이 검출된 살충제는 일반 엽채류 농가들도 뿌리지 않는 과수 병해충 약제”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이씨는 인증기관인 (주)친환경인증센터에 의뢰해 지평면 농장에서 생육 중인 동일한 샐러리와 토양을 수거해 잔류농약을 분석한 결과 살충제 성분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이씨는 “농관원 직원이 시료를 채취해 잔류농약을 분석한 시점은 6월27일인데, 검출 사실은 18일이나 지난 7월15일에 통보했다”며 “농약이 검출됐다면 즉시 통보해야 마트에 남아 있는 농산물을 폐기처분하든가 본인 물건인지 확인 후 재검사를 해야 마땅한데도 18일이나 지나서 알려준다는 게 말이 되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씨가 수확한 샐러리는 3개의 유통업체를 거쳐 최종 목포 마트에서 판매됐다.

“나는 맹세코 농약을 뿌리지 않았다. 유통과정에서 업체가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일반 샐러리하고 박스같이 했을 수도 있고, 마트 직원이 선별 과정에서 농약이 묻은 타 농산물을 접촉 후 본인의 샐러리를 만져 농약이 묻을 수도 있다”는 게 이씨의 설명이다. 또한 마트에서 판매된 본인 샐러리를 확인 후 재검사를 하려해도 이미 다 팔려 소명할 기회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씨는 영농일지와 친환경농자재 구매내역, 불 검출된 시료(샐러리·토양) 등의 입증자료를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농관원 관계자는 “관련 유통업체 및 마트 등을 모두 조사했지만 규정과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며 “이씨 사정은 이해하지만 농약 검출 결과는 번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씨는 “서류상으로만 확인하는데 무슨 문제를 발견할 수 있겠냐”며 “10여 년 동안 친환경농업을 한다는 자부심으로 농사를 지어왔고, 힘들여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을 시장에 출하한 것 밖에 없는데 죄 없는 농가만 큰 피해를 당했다”고 하소연했다.⁴⁾

□ 사례 3. 무엇이 친환경농장 주인을 대법원장 테러범으로 만들었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27일 출근길에 화염 공격을 받았다. 일흔넷의 남모씨가 500ml 페트병에 담긴 시너에 불을 붙인 뒤 김 대법원장이 탄 차에 뿌렸다. 차 문 바깥쪽에 불이 붙었으나 대법원 정문을 지키던 청원경찰관이 곧바로 꺼 다친 사람은 없었다. 건국 이후 처음 발생한 대법원장 습격 사건이다. 법관들의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한 분노 표출 또는 김 대법원장을 비롯한 이른바 사법부 ‘신(新)주류’를 겨냥한 시위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이런 일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송사(訟事)에 대한 개인적 불만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도대체 무엇이 70대 노인을 ‘대법원장 테러범’으로 만들었을까. 그의 행적을 추적해 봤다.

폭력은 용인될 수 없다. 더군다나 상대가 대법원장이다. 사연이 무엇이든 남씨는 짓값을 치러야 한다. 그의 행적을 좇은 것은 그를 변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무엇이 범죄 경력이 없는 70대 노인에게 그런 극단적 행위를 유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기존 보도와 달리 ‘화염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은 경찰이 ‘화염병 처벌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법에 화염병은 ‘용기에 인화 물질을 넣고 발화장치 또는 점화장치를 붙인 물건’이라고 규정돼 있다. 남씨가 들고 있던 페트병에는 통상 솜이나 천으로 만드는 발화장치가 없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그를 구속했다.

남씨가 거주해 온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동창리 주민과 그가 다닌 마을 교회 교인의 말, 경찰 조사 내용 등에 따르면 그는 1993년에 그곳으로 이주했다. 전에는 수도권에서 살았다. 베트남 전쟁에 사병으로 참전한 이력을 갖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교회 버스 기사로 일하다 교회 수련회 때문에 내촌면에 오게 됐고, 그때 이사를 생각했다. 집을 팔아 약 8000㎡(2400평)의 땅을 샀다. 그 뒤 약 7년 동안 밭농사를 지었다.

문제는 돼지 사육에서 비롯됐다. 2000년 강원도청은 ‘토종 흑돼지’ 장려 사

4) 한국농어민신문 2016. 09. 09

업을 벌였다. 자금 조달을 도와주고 보조금도 줬다. 남씨도 그 일에 뛰어들었다. 흥천군·고성군 등에서 10여 집이 손을 들었다. 2001년 말에 흑돼지를 키우기 시작한 그는 1년 뒤쯤 ‘친환경 축산’에 도전했다. 2007년에 ‘무항생제 축산’ 인증을 받았고, 2년 뒤에는 ‘유기농 축산’까지 인정받았다. 흑돼지 분야에서는 국내 최초였다. 유기농 축산은 유기농 방식에 따라 생산된 먹이만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 뒤 남씨는 농협중앙회장 표창 등 여러 상을 받았다. 성공 사례가 신문에 보도되기도 했다. 그는 유기농 배합사료를 만드는 설비와 돈육을 잘라 판매용으로 포장하는 시설을 마련하고, ‘너브내 머루 흑돼지’라는 브랜드도 만들었다. 하지만 돈을 벌지는 못했다. 사육 원가가 비싸 값이 비쌌다. 판매망 확보도 쉽지 않았다. 그가 운영했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2월(2013년) 매출 10만8000원, 농장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글이 있다. 그렇게 힘겨워하던 때 희망의 빛이 나타났다. 한 지상파 방송이 농장을 소개했다. 온라인 주문이 크게 늘고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판매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2013년 봄 상황이다. 그가 다닌 교회의 신동신 목사는 “‘이제는 뭔가 되려나 보다’하는 기대에 부푼 모습이었다.”고 당시를 기억했다.

그런데 그해 8월 남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겼다. 친환경 생산 인증 업무를 관장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유기농 인증 연장을 거부했다. 이 인증은 1년마다 갱신하게 돼 있는데, 부적합 판정이 났다. 문제는 미강(쌀 도정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에 있었다. 남씨가 사료에 섞은 미강이 100% 유기농산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농산물품질관리원 심사 결과였다.

남씨는 집에서 약 20km 떨어져 있는, ‘친환경’ 방식으로 생산된 곡물만 취급하는 미곡처리장에서 미강을 조달했다. 그래서 별문제 없이 3년간 인증이 연장됐다. 하지만 그해엔 조사원이 그 미곡처리장에서 ‘유기농 쌀’뿐만 아니라 ‘무농약 쌀’도 도정(전체 물량의 15.76%)한다는 것을 확인해 유기농 인증에 적합하지 않다는 보고서를 냈다. 무농약은 농약은 쓰지 않지만 화학비료는 쓰는 것을, 유기농은 화학비료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 뒤 남씨는 추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돈육 판매가 막혔고, 시설 등에 투자한 융자금 상환 압박에도 시달리게 됐다. 2015년 농장 일에 매달려 온 그의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듬해 농장 전체가 경매로 넘어갔다. 파산한 남씨는 농장 앞에 높은 컨테이너에서 살기 시작했다. 그 무렵 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원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00평의 땅을 보유한 귀농인에서 대법원장 테러범이 되기까지, 그사이에는

세 개의 주요 변곡점이 있었다. 하나는 흑돼지 사육이다. 흥천군청 관계자는 “토종 흑돼지는 성장 속도가 더디고 다 자라봐야 개량종의 3분의 2밖에 되지 않아 사실 사업성이 없었다. 강원도청이 추진한 흑돼지 키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지금은 예외 없이 모두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사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내촌면의 한 주민은 “농촌에는 나라에서 실상을 모르고 만든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빚만 떠안게 된 사람이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다른 한 포인트는 유기농 인증 심사 과정이다. 남씨가 소송에서 주장한 쟁점 중 하나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인증 취소 통보를 하기 전에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미강에 대해 남씨가 항변하거나 유기농산물임을 입증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남씨에게 그런 기회가 제공됐다면 설사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더라도 그는 덜 억울해했을 것이다. 이에 대해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검사 기관의 입장이라 ‘가이드’ 역할을 하기 어렵다. 법적으로 그런 의무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조건이었는데 왜 앞선 세 차례는 연장이 됐느냐”는 질문에는 “서류가 보관돼 있지 않아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답했다.

또 하나의 변곡점은 남씨가 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였을 때다. 1·2심에서 패소한 그는 상고한 뒤 대법원 앞에서 석 달간 1인 시위를 했다. 그리고 상고심 기각 결정이 나자 대법원장 차에 시너를 뿌렸다. 남씨가 시위를 이어갈 때 법원에서 누군가가 나와 이유라도 들어봤을까. 지난 4일 대법원에 물어봤다. 법원 측은 “민원상담관이 면담하게 돼 있고, 실제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수 시간 뒤 답변이 바뀌었다. “확인해 보니 민원상담관이 다른 일이 많아서 남씨를 만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씨는 정부가 무책임하게 벌인 사업에 뛰어들어 성공하려고 몸부림쳤다. 그런데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는 국가기관은 냉담했고, 법원은 노숙하며 시위하는 그의 하소연조차 들어주지 않았다. 이런 일들 때문에 점점 ‘분노 국가’가 돼가는 것은 아닐까, 내내 머릿속을 맴돈 생각이다.⁵⁾

5) 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사법부 수장 ‘화염 공격’ 사건을 들여다보다 (중앙일보, 2018.12.07.)

4. 농약 관련 분쟁의 구조와 특성, 주요 유형

가. 농약 관련 분쟁의 구조

- 농약(농자재) 관련 분쟁은 당사자 구조로 볼 때 크게 다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뉘볼 수 있음
 - 1) 농업인 대 농업인 간 분쟁 : 비산, 비의도적 오염문제 등
 - 2) 농업인 대 공공기관 간 분쟁 : 농관원의 친환경인증 취소처분 등
 - 3) 농업인 대 농자재기업 간 분쟁 : 농약으로 인한 피해구제 문제 등

- 1) 농업인 간의 분쟁을 공식적으로 처리(조정)하는 기구는 따로 없음. PLS 시행 이후 농약문제를 둘러싼 농업인 간의 분쟁은 공식적으로 파악되거나 집계된 바 없으며, 지역 농업기술센터 등지에서 민원 정도로 접수되는 실정

- 2) 농업인 대 공공기관 간 분쟁은 공식적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친환경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을 행정심판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음

- 3) 농업인과 농자재기업 간 분쟁은 소비자로서의 농민과 생산-판매자인 농자재기업 간의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차원에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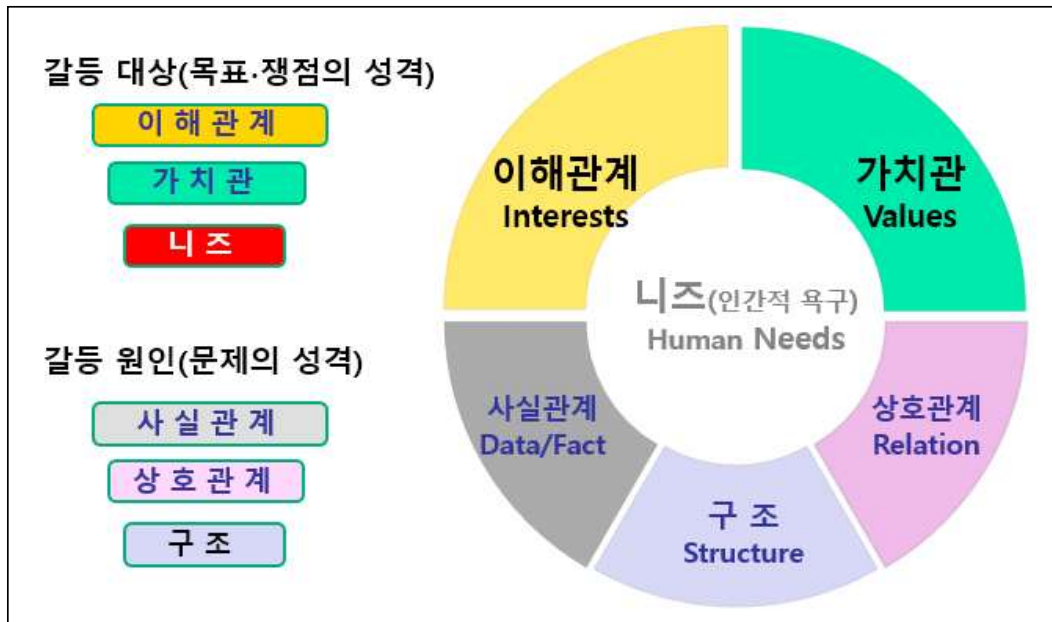
나. 갈등의 주요 요인에 따른 유형 분류

- 갈등해결학에서는 갈등의 주요 측면(핵심 쟁점, 주요 요인)을 기준으로 크게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
 - 이해관계갈등, 가치관갈등, 휴먼니즈갈등, 사실관계갈등, 상호관계갈등, 구조적 갈등

- **이해관계 갈등** : 당사자들이 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물질적·정신적 자원(Resources) 혹은 그런 자원을 사용·통제·배분하는 권한(Power) 등인 경우. 이해관계 충돌에 따른 문제를 풀 때는 통합·분해·분배적 해법이 적용되며, 대부분의 경우 타협·절충도 가능함
- **가치관 갈등** : 신념 성향 사상 종교 등 정신적 가치·기준이 서로 다르거나 충돌하는 점이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 이해관계와는 달리 타협이 불가능한 속성을 지님. 상호이해를 토대로 존이구동(尊異求同: Search for Common Ground)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니즈 갈등** : 개인 혹은 집단(국가 포함)이 정상적으로 존재를 유지·영위하려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인간적 욕구(Human Needs)가 억압·좌절·침해됨으로 인해 벌어지는 갈등. 휴먼니즈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다른 어떤 갈등 유형보다도 심각한 형태를 띠는 것이 특징. 분노 등 감정적 문제도 대부분 니즈의 문제와 연결돼 있음
- **사실관계 갈등** : 쟁점이 되는 사안의 실상이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거나,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해 다툰이 생기고 쟁점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상호간의 오해, 객관적인 정보나 자료의 부족, 같은 사실에 대한 해석의 차이 등에 기인함
- **상호관계 갈등** : 애초에 당사자들 간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 이 때문에 갈등이 야기되거나 문제해결이 어려운 경우.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과거의 갈등, 원한, 분노, 피해의식, 서운함 등으로 당사자간 관계에 균열이 생긴 것이 주요인임. 오해나 편견 등으로 상대방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그 외 여러 가지 이유로 당사자간 의사소통이 잘 안 되거나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해당함
- **구조적 갈등** : 근본적으로 관련 당사자들을 둘러싼 상황, 시스템, 제도, 사회-경제적 요인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벌어지는 갈등. ‘구조적 폭력’(Structural Violence)에 의한 갈등이 대표적인 예. 왜곡된 제도

나 관행, 차별 배제 억압 등 모순적인 사회구조,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피해나 희생을 강요하는 시스템 등이 그에 해당함. 개인이나 조직 간 역할-권한-책임 등의 관계가 애매하게 설정되거나 서로 어긋나게 되어 있는 것도 갈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함

<도표 4> 쟁점-문제의 성격에 따른 갈등의 여섯가지 유형



다. 농약 관련 분쟁의 주요 갈등유형

- 앞에서 분류한 농약 관련 세 가지 형태의 분쟁 중 3) 농업인과 농자재 기업 간 분쟁은 간혹 발생하긴 하지만, 농약을 둘러싼 보편적인 분쟁유형이 아니라, 일부 상품이나 서비스의 하자 등으로 인해 예외적으로 벌어지는 분쟁. 따라서 그 그룹은 제외하고, 1)과 2) 그룹의 분쟁을 중심으로 주요 갈등유형을 나눠보고 차후에 그에 맞는 해법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농약(농자재) 관련해 벌어지는 대부분의 분쟁은 주로 이해관계갈등의 성격을 띠며, 거기에 결합하는 것이 사실관계갈등임. 양측이 서로 이해관계를 추구하면서 주로 사실관계 문제를 놓고 다투는 양상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음

- 그러나,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므로 사안을 다룰 때 주의할 필요. 특히 친환경인증 취소처분 관련 분쟁의 경우 이해관계의 밑바닥 저 깊은 곳에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깔려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음
 - 앞서 소개한 세 가지 사례에서 생생하게 보았듯이 취소처분을 당한 농민들은 경제적 피해도 크지만 그보다도 친환경 농업을 정착시키기 위해 오랫동안 분투해온 자신의 진정어린 노력이 무시되고 폄훼되는 데 대해 더 큰 좌절감과 분노를 느끼게 됨
 -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취소처분을 통보받을 때 친환경인증만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부정당하는 느낌에 억울함과 분노, 좌절감이 견잡을 수 없이 커진다고 함
- 이는 인간에게 그 어떤 이해관계나 가치관보다 더 중요한 휴먼 니즈(Human Needs)가 침해되는 데 따른 것으로서, 이런 분쟁이 경우에 따라 다분히 **니즈갈등**의 성격을 띠 수도 있음을 보여줌
- 비의도적 농약오염 등에 따른 피해 문제 등 이해관계를 다투는 분쟁의 경우 대부분은 **사실관계**를 어떻게 규명하느냐가 핵심 관건이 됨
 - 신속하고 수용성 높은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장치와 절차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분쟁해결기구 설치-운영 및 조정위원회 활동의 핵심 요소가 될 수밖에 없음
- 비산 문제 등을 둘러싼 농업인 간의 분쟁, 특히 한 마을 이웃 간의 분쟁은 기본적으로 **상호관계갈등**의 성격을 띠음
 - 이웃간 관계가 좋을 때는 서로 양보하며 어지간한 문제는 덮고 넘어가게 되나,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이웃 농민이 **의도적으로 '비도의적 오염'**을 야기하고 그 때문에 이웃간에 서로 고통스런 보복전을 이어가는 경우도 종종 벌어지기도 하는 것이 농촌의 현실

- 따라서, 향후 농약 분야 분쟁의 효과적 해결을 모색할 때도 이와 같이 농약 관련 갈등의 특성에 맞게 접근하고 해당 유형에 따른 효과적 해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제2장. 농약 관련 분쟁처리 현황과 사례

- 앞 장에서 서술한 대로 농약(농자재) 관련 분쟁은 크게 다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뉘볼 수 있음
 - 1) 농업인 대 농업인 간의 분쟁
 - 2) 농업인 대 공공기관 간 분쟁
 - 3) 농업인 대 농자재기업 간 분쟁

- 1) 농업인 간의 분쟁은 현재 따로 다루는 기구가 없고, 2) 농업인 대 공공기관 간 분쟁은 친환경인증 취소처분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3) 농업인과 농자재기업 간 분쟁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고 있음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이 두 그룹의 분쟁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 실태와 대표적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분쟁조정 현황

- 현재 농약을 비롯한 농자재 분야에서 소비자인 농민과 생산-판매자인 농자재 기업 간의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기능은 한국소비자원에서 담당하고 있음

가. 한국소비자원의 농자재(농약) 분야 피해사건 처리 현황

- 2018년 한 해 동안 농·수·축산용품 분야의 피해구제 접수 건은 67건으로 2017년 58건 대비 15.5% 증가

- 품목별로는 농업용 기계 38건(56.7%)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농업용

시설자재 10건(14.9%), 묘목·모종·종자 9건(13.4%), 농약 4건(6.0%) 등

- 피해 유형별로는, 농기계 하자, 묘목 불량 등 품질·A/S와 관련된 피해가 36건(53.7%), 계약해제·청약철회·계약불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가 19건(28.3%), 표시·광고 6건(9.0%), 안전문제 3건(4.5%) 등의 순이었음
- 처리 결과를 보면, 합의가 성립된 건은 33건(49.2%)으로 절반 정도였으며, 정보제공·상담 기타로 종결된 사건이 27건(40.3%), 조정신청 3건(4.5%)의 순이었음
- 농작물의 피해 발생에는 실제 투입된 원료 외에 기후나 토양에 따른 환경적인 요인과 농가별 영농방법의 차이에 의한 기술적인 요인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여 책임소재 규명이 어려움
 - 또한 피해가 발생한 직후 농가들의 대응이 미숙하여 소비자피해 현장을 보존하지 못하거나, 농업 전문기관의 원인규명 절차 등을 간과하면서 입증근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보상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합의된 사건의 이행 방법으로는, 환급이 16건(23.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리·보수 5건(7.5%), 배상·교환·계약해제가 각각 3건(4.5%) 등의 순이었음

나. 소비자원의 농약 관련 분쟁조정 결정사례

저장성향상 농약 사용 후 과피흑변된 배 배상 요구⁶⁾

1. 사건 개요

- 청구인은 2005. 9.경 피청구인의 직원으로부터 “○○○프래쉬”(저장성향상제)가 배 저장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설명을 듣고 구입한 후 배

6)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결정사례. 저장성향상 농약 사용 후 과피흑변된 배 배상 요구. 2006. 09. 20

(품종 : 신고)를 저장한 저온저장 창고 2동 중 1동에 같은 해 10. 12. 피청구인의 직원이 “○○○프레쉬”를 훈연처리한 후 같은 해 11. 20.경 배의 상태를 확인한바, 위 약제를 사용하지 않은 창고의 배는 정상이었으나, “○○○프레쉬”로 훈연처리한 창고의 배는 흑변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요구함.

2.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은 30년 이상 배농사를 지으면서 배의 과피가 흑변된 적이 없었고, 배 수확 후 7일 이상 야적.정리(꼭지 자르기) 등을 통해 동일한 조건으로 저장한 결과 일반창고의 저장배는 정상인 반면, “○○○프레쉬”로 훈연 처리한 창고에 저장한 배의 과피가 흑변된 것은 피청구인의 “○○○프레쉬”에 의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반면,
- 피청구인은 “○○○프레쉬”에 의한 배 과피흑변이 있다는 시험연구결과나 타농가 피해가 없었고, 배의 수많은 과피흑변 요인(저장장해와 재배.환경 등)을 “○○○프레쉬”만으로 방제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배 과피흑변은 “○○○프레쉬” 자체의 하자 또는 약품처리상의 문제로 발생하였다는 근거도 없고, 창고입고 전에 건조(이하 ‘예건’이라 함)를 최소 7일 이상 하여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함.

3. 판단

가. 청구인의 배농사 경험 및 재배현황

- 청구인은 30년 이상 배 재배경력이 있다고 함.
- 배 재배면적 : 7,000평(현재 수확중인 배 재배면적은 4,000평임)
- 배의 주품종은 신고이고, 저온냉동창고 2동에 배를 저장하여 가격이 비싼 시기에 판매한다고 함.

나. 배 수확 및 저장 처리과정

○ 청구인은 1차 수확은 2005. 9. 15.부터 약 5일간, 2차는 같은 해 10. 초순경에 수확하였으며, 수확 후 5일 정도 꼭지접기 등을 통해 정리 후 저장창고에 입고하였다고 함.

- 이 사건 약제처리창고에 입고한 배는 1차 수확한 1000상자와 2차 수확한 700상자를 같은 해 10. 10.경에 입고를 완료하고, 나머지 창고에는 청구인의 나머지 수확한 배와 타인의 배를 저장하고 있었다고 함.

- 입고 2일 후인 같은 해 10. 12. 피청구인 직원이 창고 현장을 방문, 약제를 처리한 후 24시간이 경과한 다음날 현장을 방문하여 마무리한 다음 약제를 창고 밖으로 가지고 나왔음.

- 이 때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직원은 약제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른 창고에 저장중인 5상자의 약제 미처리 배를 약제처리창고에 함께 입고하여 같은 해 11. 20. 확인한 결과 정상이었음.

다. 약제구입 경위

○ 피청구인의 직원이 2005. 9. 청구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배 저장에 효과가 있다는 “○○○프레쉬”의 효능을 설명하면서 저온창고에 처리해 볼 것을 권유함.

○ 청구인은 피청구인 직원의 권유에 따라 9월 하순 “○○○프레쉬”를 사용하기로 하였고, 피청구인직원이 약제사용 가능여부 및 적정약제 사용량 등을 조사하여 “○○○프레쉬 주문서”를 작성하고 1,665,000원을 지급함.

○ 제품주문서상 기재내용

- 과일류의 저장성에 관여하는 에틸렌의 발생 및 작용을 억제하여 저장성

을 증진시키는 제품이고, 처리효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 시료를 판매자에게 무상 제공함.

- 판매자는 주문자에게 ‘○○○프레쉬’ 처리방법에 대해 지도하며, 처리기간 중 주문자는 판매자의 지시사항 외에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됨.
- 처리기간 중 저장고의 출입구를 개폐하거나 저장고 밀폐상태를 훼손하는 등 판매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프레쉬’ 처리효과를 보증할 수 없음.

라. 농약개요(등록증 및 포장지상 기재사항)

상표명 : ○○○프레쉬

적용 병해충 및 농작물 범위 : 사과(쓰가루).저장성 향상, 배(신고).저장성 향상, 단감(분유).저장성 향상, 사과(후지).저장성 향상

적용작물 및 사용량

작물명	적용대상	사용적기 및 방법	희석배수	등록일자 (최초등록일자)
사과 (쓰가루)	저장성 향상	수확1일 후 16시간 밀봉처리	1000ppb (70mg/ m ³)	2005. 6. 14. (2005. 3. 29.)
배 (신고)	저장성 향상	수확1일 후 16시간 밀봉처리	"	2005.9.16. (2005. 9. 1.)
단감 (분유)	저장성 향상	"	"	2005.9.16. (2005. 9. 1.)
사과 (후지)	저장성 향상	"	"	2005.10.10 (2005. 9. 29.)

특징 : 에틸렌 작용을 저해·지연시켜 저장성 향상, 농산물 수확 및 바로 사용이 가장 효과적임.

사용방법

- 완전 밀폐공간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기간 중 출입문, 환풍기 등을 개방하지 마십시오.
- 처리장소(창고)내에 농산물은 가스가 잘 스며들 수 있는 상자를 사용해서 적재하여야 약효가 충분히 발현될 수 있음.
- 제품을 처리할 곳에 용기를 설치한 후 소정량의 물을 넣고 본 제품을 넣으면 가스가 발생하고, 처리 후 즉시 창고의 문을 닫고 나와서 출입문을 밀봉함

약효-약해상의 주의사항

- 완전 밀폐되지 않으면 약효가 떨어지므로 밀폐여부를 확인 후 사용함.
- 약제를 처리하고 16시간 이전에 개방하면 약효가 떨어지므로 사용을 금함
- 수확 3일후 사용할 경우 약효가 떨어지므로 사용을 금함.

마. 손해액 산정

20,034,500원(=850상자(피해상자수) × 23,570원(상자당 가격))

- 피해상자수 : 현재 확인이 어려워 청구인의 주장을 근거로 산출함.
- 상자당 가격 : 청구인이 2005년도 생산한 일반창고 저장배 325상자(상자당 15kg)를 “상주외서농협”에 3회(2006. 5. 31, 6. 3, 6. 16)에 걸쳐 판매한 상자당 평균가격임.

바. 결론

- 피청구인은 배 과피흑변이 “○○○프레쉬”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는 시험연구결과나 타 농가에서 동일한 피해가 없었고, 수많은 배 과피흑

변 요인(저장장해와 재배.환경 등)에 대해 “○○○프레쉬”만으로 방제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배 과피흑변은 “○○○프레쉬” 자체의 하자 또는 약품처리상의 문제로 발생하였다는 근거도 없고, 창고입고 전에 ‘예건(최소 7일 이상)’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 농촌진흥청 표준영농교본 배재배에 의하면, 배의 과피흑변현상은 유전적 요인(금촌추, 신고 등), 저온저장(0~5°C), 저장고내 높은 습도, 빛의 투과가 적은 봉지 씌운 배, 수확시기가 늦거나 조기수확한 배를 저온저장할 경우 등 발생원인이 다양하여 이 사건 “○○○프레쉬”를 훈연처리한 창고에 저장한 배의 과피흑변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어려우나, 청구인은 배농사를 30년 이상 지으면서 7000평의 배밭에서 생산한 배를 2동의 저온냉동창고에 저장하는 배농사 전문가인 점, 2005. 10. 피청구인 직원이 사과와 달리 배에는 약효가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프레쉬”의 사용을 적극 권유하고, 배를 과다하게 저장하여 창고 내 공기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주문서 및 농약포장상의 용법에 따라 직접 훈연처리한 점, 피청구인은 이 사건 배의 과피흑변 추정원인으로 예건부족(최소 7일)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프레쉬” 등록증과 포장지에 의하면 사용적기는 “수확 1일후”, 특징 “수확 후 바로 사용이 가장 효과적”, 약효.약해상의 주의사항에 “수확 3일후 사용시 약효가 떨어짐” 등으로 기재되어 일관성이 결여되었으며, 청구인의 경우 수확 후 7일~15일 정도 예건한 점, “○○○프레쉬”의 효과검증을 위해 함께 저장한 약제 미처리 배(5상자)와 “○○○프레쉬”를 처리하지 않는 창고에 저장한 배는 정상이었으나, “○○○프레쉬”를 처리한 창고의 저장배는 과피가 흑변되어 이 사건 배 과피흑변현상의 발생과 피청구인의 “○○○프레쉬” 사용과의 인과관계를 배제하기 어렵고,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청구인도 1년간 배농사를 지어 수확한 배 1,700상자를 저장하면서 사전에 충분한 시험 등의 검증절차도 없이 “○○○프레쉬”를 사용한 점, 이 사건 창고에 예년 보다 과다하게 배를 저장하였다는 진술, 배 과피흑변현상을 발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의 과실이 있다할 것이고 그 비율은 50%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임.
-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손해액 20,034,500원 중 50%인 10,017,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함이 상당함.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6. 10. 10.까지 금 10,017,000원을 지급한다.

조정결정 2006. 9. 11.

2. 행정심판위원회의 친환경인증 관련 분쟁 심판

1) 친환경인증 취소처분 관련 행정심판 현황

- 친환경농산물 인증 취소처분과 같이 행정기관이 내린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크게 민원,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 3가지가 있음
-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으며, 위법성을 판단하는 행정소송에 비해서는 신속·간이하고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위법성,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해 결정(재결)을 내린다는 점에서 유용한 권익구제 제도임

- 그러나,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재결례는 17건으로 이 분야에서의 행정심판 이용률은 대단히 저조한 편임
- 2014~2018년 5년간 친환경(유기농, 무농약 포함) 농산물 인증취소 등 유기농산물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진 것은 총 17,613건에 달하는 반면, 처분이 부당하다고 여겨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재결을 받은 사례는 16건에 불과, 전체 처분 건수의 0.1%도 안되는 대단히 미미한 수준임

2) 친환경 인증취소 관련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사례⁷⁾

사 건 명 친환경농산물 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
 사 건 번 호 2018-14313
 재 결 일 자 2019. 01. 08.

□ 사건 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유기농산물) 인증을 받고 ○○남도 ○○군 ○○읍 ○○리 974-○○ 외 7필지에서 찰벼를 경작하는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은 2018. 5. 4. 수거된 청구인의 찰벼 종자에서 유기합성농약성분인 페노뷰카브(Fenobucarb) 0.0147mg/kg, 티아클로프리드(Thiacloprid) 0.0257mg/kg이 검출되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의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7. 4. 청구인에게 친환경농산물 인증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청구인 주장

7)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재결례. 친환경농산물 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 2019.01.08

2018. 4. 27. 청구인의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보관 중이던 유기종자가 모두 소실되어 부득이 이웃 농가로부터 일반종자를 빌린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불의의 사고로 인한 것이고, 청구인이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이래 단 한 번도 잔류농약이 검출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고의적으로 반복하여 인증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2019년 12월말까지를 유기종자의 인증 심사 및 사후관리의 시범운영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중에 발생한 경미한 인증 기준의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라고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 피청구인 주장

2018. 5. 4. 청구인의 농가에서 수거된 찰벼 종자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되었고, 2018. 6. 18. 청문 시 청구인이 재검사를 요청한 종자에서도 농약성분이 검출되었는바, 청구인이 처음부터 화재로 모든 종자가 소실되었다고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면 유기농산물 인증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으나,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화재가 발생하여 종자가 모두 소실된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고, 2018. 6. 18. 재검사를 요청한 시료도 본인이 생산한 종자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주 문

피청구인이 2018. 7. 4. 청구인에게 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취소처분을 취소한다.

□ 재결 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유기농산물) 인증을 받고 찰벼를 경작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찰벼 종자에서 유기합성농약성분이 검출되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의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친환경농산물 인증취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화재로 인해 보관 중이던 유기종자가 모두 소실되어 부득이 이웃 농가로부터 일반종자를 빌렸으나, 이는 고의적으로 반복하여 인증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은 시범운영기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국립농산

물품질관리원장이 “시범운영기간 동안 경미한 인증기준 위반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하라”고 하였다는 점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종자는 이웃 농가로부터 얻어 보관 중이던 일반종자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유기농산물 인증농가는 유기농산물 재배방법에 따라 재배한 식물로부터 유래된 종자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청구인은 화재로 유기종자를 모두 소실하여 이웃 농가로부터 일반종자를 얻어 농사용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면 사전에 인증기관인 피청구인에게 유기종자를 구할 수 없음을 증명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어야 함에도 이러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에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시범운영기간 동안 경미한 인증기준 위반인 경우에는 현지 지도 및 교육, 시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었고 일반종자를 사용한 경우에도 유기종자를 구할 수 없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승인만 받으면 인증기준을 달성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경미한 위반이라 할 수 있으며 사건이 시범기간에 발생하였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 사전에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도록 행정지도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처분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제3장 관련 분야 국내 분쟁조정기구와 조정제도 현황

- 차후 농약(농자재) 분야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구와 절차를 설계하는 데 참고할만한 관련·유사 분야의 대표적 분쟁조정기구로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꼽을 수 있음
- 두 기관의 구성·운영 방식과 분쟁조정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

가.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현황

- 설립 근거 :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 위상-성격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요청 사건을 심의하여 조정결정을 하는 준사법적인 기구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은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 절차 진행 이전에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마지막 수단
- 구성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는 비상임. 위원은 한국소비자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
 - 현재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117명으로 총 119명의 위원이 위촉돼 있음 (비상임위원 분포 : 소비자대표 21명, 사업자대표 14명, 분야별 전문가 54명, 변호사 28명 등)

- 운영 : 매주 1~3회의 위원회 개최
- 접수 건수 : 분쟁조정위의 연간 접수 건수는 매년 약 3천 건 내외로, 2016년 3,655건, 2017년 2,790건이었음

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처리절차

-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소비자상담센터(1372번)에 상담 신청을 해야 함. 상담직원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적절한 처리방법 등을 안내하고, 당사자와의 원만한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도록 안내함
-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은 피해구제 부서로 이관되어 사건처리 담당직원의 사실 조사가 시작됨. 사실조사는 우선 사업자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하고 지정된 양식에 의해 해명을 요구하게 됨
- 이러한 사실조사와 법률조사를 통해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권고하며,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면 종결 처리됨. 만일 당사자 일방이라도 보상안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결정으로 처리하게 됨

1) 소비자상담

-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전화, 서신, 팩스, 인터넷, 방문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음
 - 국가(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또는 사업자도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음
- 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상담 신청 건에 대해 피해구제 접수가 가능한 사건인지 여부를 상담하게 되며, 접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사건의

경우에는 적절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불만을 처리하거나 타 기관 알선 또는 기타상담 등으로 처리하고, 피해구제 접수 요건이 충족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신청인(소비자)과 피신청인(사업자)의 인적사항과 피해사실 등을 확인한 후, 피해구제 신청 사건으로 접수하여 피해구제담당 부서로 이관함

<도표 5>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및 조정절차도⁸⁾



8)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안내. <http://www.kca.go.kr/odr/link/bj/br/osBjReqInfoW.do>

2) 합의권고

-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피해구제의 신청 또는 의뢰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도 가능)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 해명을 요구함
- 한국소비자원은 사실조사 및 법률조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 전문위원회의 자문 및 시험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권고하게 되며, 이러한 합의권고에 대해 분쟁당사자 일방이라도 수용하지 않아 피해구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단, 사실조사 과정에서 원인 규명을 위한 전문가 감정 및 자문, 시험검사 등의 사유 발생시 90일까지 기간연장 가능)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닐 때에는 지체 없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함

3) 분쟁조정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0인 이내의 위원 (상임 5인, 비상임 145인)으로 구성되며,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문기구로서 법률, 자동차, 공산품, 보험, 의료 등 46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음.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쟁조정회의, 2명 이상 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회의로 구성됨
-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 소비자 및 사업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을 각 1인 이상 균등하게 포함하여 소집하여야 함
- 위원장은 회의개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하며,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됨

□ 조정 절차

- 위원장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소비자기본법 제66조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조정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하게 됨
 - 다만, 당사자의 요구나 원인규명을 위한 시험검사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정결정 기간이 연장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 자문 및 이해관계인, 소비자단체 또는 주무관청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 조정위원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내린 조정결정 내용에 대하여 양 당사자에게 서면 통보 후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확인하게 됨
- 조정결정이 양 당사자에 의해 수락되거나 조정결정 내용을 당사자가 수령한 후 15일 이내에 양 당사자가 수락거부 의사를 서면에 의해 표시하지 않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며,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여 원본은 위원회가 보관하고 정본은 양 당사자에게 송달함. 성립된 조정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됨
-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 중 일방이라도 수락 거부 의사를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조정결정이 성립되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절차인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해결하게 됨

- 만약,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사업자의 수락거부로 조정이 불성립된
건에 대하여 소비자가 민사소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은 일
정 범위 내에서 ‘소송지원변호인단’에 소속된 변호사로 하여금 해당 사
건의 소송업무를 지원토록 하고 있음
- 또한, 조정위원회가 내린 조정결정이 성립은 되었으나, 당사자 일방이
결정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 제1768호(각종 분쟁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조서 등에 대한 집행문 부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할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음

□ 집단분쟁조정제도

- ‘집단분쟁조정제도’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 집단분쟁조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소비
자 또는 사업자가 의뢰하거나 신청할 수 있음
- 집단분쟁조정 대상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수가 50인 이상이고, 사
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어야 함. 원인행위가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하였더라도 집단분쟁조정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함
- 조정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
간 신문에 14일 이상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함. 이는 동일한 피
해를 입은 소비자가 분쟁조정의 당사자로 추가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함. 그 절차에 참가하려는 소비자는 개시공고기간 내에 서면으
로 참가신청을 해야 함
-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공고가 종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마쳐야 하며, 조정결정된 내용은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되고 당사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거부 의사를 서면에 의해 표시하지 않는 경우 조정은 성립됨

- 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조정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즉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성립 후 당사자 일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
-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 내용을 수락한 사업자에게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사업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권고의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 피해구제 절차의 종료

- 한국소비자원에서는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취하한 경우, 피해구제의 이행을 확인한 경우 등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에 대한 구제절차를 종료할 수 있음
 - 피해구제 내용의 이행사실을 신청인을 통해 확인한 경우
 - 양 당사자가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내용이 전화 또는 서면으로 확인된 경우
 - 신청인이 신청을 취하한 경우
 - 신청인으로부터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실을 전화 등으로 확인하거나 피신청인으로부터 서면으로 확인한 경우
 - 피해구제 신청이 이유 없음으로 판명된 경우
 - 처리도중 당사자의 연락불능 등으로 그 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

명된 경우

- 행정관청의 행위가 선행되지 않으면 피해구제절차를 진행시킬 수 없는 경우
- 신청인의 행위가 전제되어야 피해구제가 가능하나 신청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아 피해구제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 시험검사 또는 전문가의 자문 등에도 불구하고 원인규명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신청건의 정확한 처리를 위해 필수적인 자료를 일정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당해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있거나 이미 그 피해구제 절차를 거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피해구제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후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소비자분쟁 조정기구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의 당해 피해구제 피신청인의 보상내용이 미흡하거나 보상거부 등으로 신청인이 소송 등으로 처리의사를 밝힌 경우
- 신청인이 같은 내용의 사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신청하여 2회 이상 처리결과를 안내했음에도 3회 이상 반복 신청된 경우
- 해당 피해구제 신청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2.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와 방법

환경분쟁조정제도

-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

- 환경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행위와 피해 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반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 입증을 대신해 주고, 절차도 간단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환경분쟁 조정(調整) 절차의 종류와 효력⁹⁾

- **중재(仲裁)** :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할 경우 시작되며, 사실조사 후 중재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절차 (처리기간 9월)
 - 효력 : 중재위원회에서 중재가 이루어지면, 양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음
- **재정(裁定)** : 사실조사 후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 (처리기간 9월)
 - 효력 : 위원회가 재정결정을 행한 경우,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당해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제기했다가 소송을 철회한 경우 포함) 당사자 간에 당해 재정내용과 동일한 재판상·화해의 효력이 있음
- **조정(調停)** :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하는 절차 (처리기간 9월)
 - 효력 :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조정조서를

9)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안내. <http://ecc.me.go.kr/front/common/information.do>

작성하며, 이 경우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음

○ **알선(斡旋)** : 당사자의 자리를 주선하여 분쟁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 (처리기간 3월)

- 효력 : 알선위원의 중재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를 작성하며, 합의서 작성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됨

○ **직권조정** :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하여 중대한 피해, 환경 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환경분쟁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제도

- 대상 기준 : △환경피해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인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분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분쟁,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분쟁

□ **조정(調整) 신청 대상**

○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및 소음, 진동과 악취 등에 의한 건강·재산·정신에 관한 분쟁

○ 환경시설(폐기물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치·관리와 관련된 분쟁

○ 진동으로 인한 지반침하에 따른 분쟁

○ 자연생태계 파괴로 인한 분쟁

○ 일조·조망저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건축으로 인한 다른 분쟁과 복합되는 경우의 분쟁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처리 사건

- 신청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분쟁의 재정(裁定)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재정/조정/알선
- 2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재정/조정/알선
- 건축으로 인한 일조방해 및 조망저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 환경피해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중앙위원회에서 진행 중이거나 재정된 사건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사무
- 중대한 환경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분쟁으로서 (가)환경피해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인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분쟁 (나) 조정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분쟁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정(調停)절차를 개시할 수 있음
- 관할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처리 사건

-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사무 중 신청 신청금액이 1억 원 이하인 분쟁의 재정(다만, 일조방해, 통풍방해, 조망저해로 인한 분쟁의 재정은 제외)
-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사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지 않는 분쟁의 조정(調停)·알선(斡旋)

□ **환경분쟁 신청사건의 유형과 처리결과, 처리기간**

- 2018년에 484건이 접수돼 총 238건이 처리됨. 처리된 사건 238건 중 소음·진동이 208건(87%)으로 압도적 비중을 점하며, 그 외 일조권 16건(7%), 수질오염 4건(2%), 대기오염 2건(1%), 토양오염 등 기타 8건(3%)
- 2018년에 처리된 사건 238건 중 88%인 210건이 재정으로 처리됐고, 조정예 회부된 것은 다 1건이었음. 알선은 전혀 없었고, 합의종결 27건, 자진철회 53건이었음(접수된 484건 중 나머지 193건은 이월-처리 중)
- 사건 처리기간은 평균 5.8개월 소요된 것으로 집계됨(2017~18년의 경우 평균 7.4개월 소요)

제4장. [해외사례] 주요 선진국의 농업·농약 분야 분쟁해결제도

-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농업 분야 갈등분쟁의 효과적 해결을 위해 구축-운영하고 있는 전문적인 기구와 제도의 실태와 효과 등을 상세히 살펴보고 국내 농약 분야 분쟁조정기구 설립 및 운영 방안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
- 특히 농약·농자재 사용 및 비의도적 농약 오염 관련 분쟁의 발생 양상과 처리 방식, 주요 사례 등을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

1. 미국의 농약 관련 분쟁 발생 실태와 분쟁해결제도

가. 항공방제 등 비의도적 오염 관련 분쟁 발생 실태

- 미국에서 비산 등 비의도적 오염에 의한 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한 연구 조사 결과, 1998년부터 2006년까지 비산 농약에 의한 사고가 큰 3,000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됨¹⁰⁾
- 2013년 아이오와 주의 경우 농약 비산으로 피해를 봤다고 농약 당국에 신고한 사건 중에 실제로 비산된 농약이 검출된 경우가 81%에 달한 것으로 보고됨
- 아이오와 농업부 집계에 의하면, 2008-2012년 사이에 농약 비산으로 유기농 과일·채소나 원예작물에 피해를 본 사건이 58건이었음. 비산 유발자에게 벌금이 부과된 것은 그중 11건이었고, 벌금액수는 평균

10) Lee, Soo-Jeong; Mehler, Louise; Beckman, John; Diebolt-Brown, Brienne; Prado, Joanne; Lackovic, Michelle; Waltz, Justin; Mulay, Prakash; Schwartz, Abby (August 2011). "Acute Pesticide Illnesses Associated with Off-Target Pesticide Drift from Agricultural Applications: 11 States, 1998-2006".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 119 (8): 1162-1169

716달러였다고 함

- 특히, 2016년 10월 미국 아칸소 주에서 농약 비산 문제로 이웃 농부 간에 살인사건이 벌어져 큰 충격을 준 바 있음¹¹⁾
- 아칸소 주의 농부 마이크 왈라스는 5,000 에이커에 옥수수 콩 면화 등을 재배하고 있었는데, 이웃 농지에서 항공방제한 제초제 다이캄바(개비름 등 잡초 제거용) 때문에 자신의 농작물이 큰 피해를 보게 되자 두 번이나 주정부의 농작물위원회(Arkansas State Plant Board)에 민원을 접수한 바 있음
- 왈라스가 이웃 농부 앨런 존스와 만나 이 문제를 놓고 언쟁하던 중 이웃 농부 존스가 쓴 총에 맞아 즉사
- 왈라스는 평소 선행을 많이 하던 성실한 농부였음. 그런 그의 참극은 전국의 신문 방송 통해 크게 보도돼 농약 비산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을 극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 됨

나. 농업 분야 분쟁조정기구와 해결절차·방법

□ 미국의 농업 분야 분쟁해결 시스템

- 미국 연방 농업부(USDA)에서는 농업 분야의 갈등분쟁을 원만히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 갈등해결 프로그램(USDA Agricultural Mediation Program)을 운영하고 있음
 - 1987년 제정한 농업신용법(Agricultural Credit Act of 1987)에 의해 농업부 장관은 각 주 차원의 전문적 갈등해결 프로그램(USDA Certified State Mediation Programs) 개발을 지원하고 승인하도록 하고 있음

11) David Koon, Farmer vs. farmer. 『Arkansas Times』 Aug 10, 2017.

- 이 법률에 의해 연방정부는 1988년부터 1991년까지 해마다 750만 달러를 지원하고 각 주의 정부는 그의 50% 또는 50만 달러를 매칭펀드로 조성해 주별로 농업 분야의 전문적 갈등해결 프로그램 개발-운영
 - 2000년에 제정된 곡물표준법(The US Grain Standards Act of 2000)에 의해 각 주 차원의 농업 분야 갈등해결 프로그램 재승인
- 각 주에서는 대체로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지정해 농업 분야 분쟁해결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며, 연방 정부는 이러한 기관에 운영자금을 지원함
- 예컨대, 뉴욕 주의 경우 뉴욕분쟁해결협회(New York State Dispute Resolution Association, Inc.)에서 농민들간 다툼 등 농업 분야의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함
 - 펜실베이니아 주의 경우, 농업 분야 분쟁해결 프로그램을 펜실베이니아 로스쿨에 위탁 운영하고 있음
- 이들 농업 분야 분쟁해결기관에서 주로 다루는 분쟁 유형으로는, 농사자금 대출 관련 문제, 농약 사용 문제, 농업활동과 습지 등 생태계 보호의 상충문제, 국립공원에서의 목초재배 및 가축방목 문제 등이 있음
- 미국의 농업 분야 분쟁해결 프로그램에서 주로 활용되는 프로세스는 미디에이션(Mediation)이란 절차임. 이를 국내에서 흔히 조정(調停)으로 번역해서 동일시하고 있으나 국내 각종 분쟁조정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조정과는 본질적으로 다름
- 미디에이션의 적절한 번역어는 중조(仲調). 당사자들 중간에서 이견을 조율해 조화롭게 한다는 뜻
- 분쟁해결 절차로서의 조정(調停)은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당사자 조사-면담 등 분쟁사안을 알아본 뒤 적절한 조정안을 제시해 당사자들에게 수락하도록 권유하는 절차임. 당사자들이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하고

당사자들이 거부하면 불성립으로 끝나게 됨

- 반면, 미디어이션(仲調)은 갈등해결전문가(분쟁이 발생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갈등해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전문가)가 당사자들 사이에서 대화와 문제해결 과정을 잘 이끌어 상호이해와 체계적 문제 분석을 토대로 근본적·상생적 해결책을 창출해 갈등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임

- 이러한 미디어이션 프로그램에 드는 비용은 1건당 약 687~700달러. 기존의 방식(청문회 등)으로 분쟁을 처리할 경우 1건당 통상적으로 약 3,000~4,000달러의 비용이 드는 것을 절약할 수 있게 되며, 당사자들의 만족도는 훨씬 높게 나타남

□ **농약 비산으로 인한 피해 등 분쟁이 생겼을 때 : 메릴랜드 주의 경우¹²⁾**

- 항공방제 등에 의한 농약 비산으로 피해를 입게 되면 우선, 주정부 농업부에 신고
- 신고를 접수한 농업부에서는 비산 여부에 대한 조사, 관계자들 및 증인 면담조사, 증거 수집 등 진행하고, 조사 결과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주정부는 해당자에게 벌금 부과
 - 이 경우 벌금은 주정부로 귀속되고 피해 농민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음
-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증거를 수집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함
 - 주 정부의 조사-징계나 소송과정에는 시간이 상당히 걸려 피해 당사자들은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음

12) Paul Goeringer (2017), "After Experiencing Drift Damage, What Should You Do?" on the Website of Department of Agriculture, Maryland University.

- 또 다른 방법은 메릴랜드 주 농업부에서 운영하는 농업갈등해결 (Agricultural Conflict Resolution Service, ACRoS)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
 - ACRoS는 미연방 농업부에서 승인한 전문적 갈등해결(mediation) 프로그램
 - 미디어이션은 법정 밖에서 갈등해결 전문가(mediator)의 도움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하고 이웃 농민들 간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임

□ **캘리포니아 주 병해충구제위원회의 분쟁해결제도**

- 주정부에서 농약 규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해충구제위원회 (Structural Pest Control Board)는 항공방제에 의한 비산 등 농약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conciliation), 미디어이션 등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를 직접 진행하거나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쟁해결기구에 의뢰해 미디어이션 등 전문적인 갈등해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함
- 1986년부터 발효돼온 캘리포니아 주의 분쟁해결프로그램법(Dispute Resolution Program Act, DRPA)¹³⁾에 의거해 지역사회 분쟁해결 전문기구에 재정적 지원이 이뤄짐
- 가족, 이웃, 동료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소송에서와 같이 적대적으로 임하지 않고 좋은 관계에서 분쟁을 함께 풀도록 함으로써 합의로 분쟁을 매듭짓는 비율이 80%가 넘고 관련 당사자들의 만족도도 아주 높은 편임

13) BPC § 465 et seq.

□ **농업분쟁 해결 위한 미디어이션절차(메릴랜드 주 농업갈등해결 프로그램)¹⁴⁾**

1. 농업 관련 분쟁의 당사자(농업 생산자, 개인, 조직 등)는 메릴랜드 주 농업갈등해결프로그램(Maryland ACRoS)에 접촉(연락·방문)해서 소정의 양식에 의한 ‘미디어이션 신청서’ 작성-제출
2. 농업갈등해결프로그램(Maryland ACRoS)의 담당자가 상대측(피신청인)에게 연락해 미디어이션 참석의사를 확인. 분쟁해결(미디어이션) 코디네이터는 분쟁상황의 개요에 대해 조사해서 이후 갈등해결전문가(미디어이터)에게 전달할 보고서 준비
3. 분쟁해결(미디어이션) 코디네이터가 해당 분쟁 사안을 담당할 미디어이터 선정
4. 신청인, 피신청인 등 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미디어이션 회의 일시, 장소 등 공지
5. 분쟁해결 위한 미디어이션 회의는 대부분의 경우 2~3시간 만에 마무리되며, 모든 참석자들이 동의하면 연장될 수 있음

□ **미디어이션 회의 진행과정¹⁵⁾**

1. 미디어이터(仲調人)는 분쟁해결을 위한 회의를 주관함. 이를 위해 우선 회의실을 정하고 효과적 의사소통 위한 자리 배치 등 준비작업
2. 당사자들이 도착하면 환영하고 서로 소개
3. 미디어이터는 회의 진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수칙을 정하고 참석자들에게 동의 얻음

14) Maryland Department of Agriculture, Steps in Agricultural Mediation in MEDIATION INFORMATION SHEET

15) Maryland Department of Agriculture, What Happens In A Mediation Session? in MEDIATION INFORMATION SHEET

4. 각 참석자는 차례로 분쟁사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관계 등 이야기. 이때 각 당사자는 분쟁사안에 대한 자신의 감정도 개략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음
5.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미디어이터는 분쟁의 쟁점을 명료하게 정리하여 당사자들에게 제시함
6. 미디어이터는 쟁점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당사자들과 검토하고 각자 원하는 방안을 이야기해 함께 논의·검토 진행
7.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을 탐색하고 문제해결 방안을 찾아 합의 모색
8. 당사자들과의 논의 결과 합의가 도출되면 미디어이터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마무리함

※ 미디어이션 비용

- 메릴랜드주 농업갈등해결프로그램(Maryland ACReS)은 위와 같은 미디어이션을 무료로 진행해주고 있음. 다만, 미디어이션 회의가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추가로 하게 될 경우 그에 따른 실비를 양측 당사자들이 함께 부담하도록 함. 과학적 검사나 법적·기술적 전문가 자문 등이 필요할 경우 또한 그 비용을 당사자들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2. 캐나다·호주의 농약 분야 분쟁조정기구 실태

- 미국과 유사하게 앵글로-색슨계 이민자들이 주도하는 영어권 국가인 캐나다와 호주는 미국에서 개발된 현대식 분쟁해결제도를 일찍 받아들여 정착시켰음

- 농업·농약 분야 분쟁해결제도와 기구도 미국과 대체로 비슷한데, 캐나다와 호주의 주 단위에서 그 실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농약 관련 분쟁 등에 대한 해결지원 기능은 주 정부의 농업부에서 직접 수행하기도 하고 별도의 독립적 기구에서 역할을 맡는 경우도 있는 등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음

□ 캐나다 앨버타 주 농업인지원실(FAO)

- 앨버타 주 농업인지원실(The Farmers' Advocate Office, FAO)은 주 정부 농업부에서 농업인과 목장주들을 지원하기 위해 1973년에 처음 설립
- FAO는 △농자재의 소비자인 농업인 보호 △농민의 자산과 사업 등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 △농민들의 민원 등에 대한 공정한 처리 등 7개 영역의 지원활동을 하는데 △농촌지역의 분쟁해결도 그중 하나임
- 농업인이 다른 개인이나 공공기관, 기업 등과 갈등을 겪게 되면 FAO에 연락해 도움을 청할 수 있음
- FAO는 가축 방목, 항공방제와 비산 문제, 용수문제, 농지 경계선 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분쟁을 다뤄왔음
- FAO의 2017-18 연례보고서에 의하면, 1년간 1,200건의 문의를 처리하고 114건의 분쟁을 해결했음

앨버타 주 농업인지원실(FAO)의 지원활동 7개 영역¹⁶⁾

1. 소비자 보호 Consumer protection

농장 관련 분야 지원·규제 당국에서 제품의 품질보증, 부품 공급, 면허 발급, 기술적 조사 등을 통해 농자재 소비자인 농업인들을 지원·보호하고 농업기자재위원회(Farm Implement Board)의 소비자분쟁 관련 절차를 지원하는 역할 수행

2. 재산증식·사업기회 지원 Rural opportunity

농산촌 지역의 부동산가치 증식, 유휴 토지 활용 사업 지원, 사업추진에 따른 리스크 완화, 에너지산업과 연계한 경제적 기회 활용 등 지원

3. 공정한 절차 Fair process

농업인들이 주도하는 항의·재심절차 운영 등으로 농업 관련 제반 업무처리 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지원

4. 토지권리 보호·지원 Landowner rights

농토나 목장 근처에 에너지·발전설비 설치 등으로 영향을 받게 될 때 농업인들이나 목장주들에게 관련 지식과 정보, 자문 등을 제공. 사업자 등과 분쟁을 겪을 경우 미디어이션 등으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우물·지하수 등의 복원·관리업무도 담당

5. 갈등·분쟁 해결 지원 Rural disputes

농업인이나 목장주들이 다른 개인, 공공기관, 기업 등과 갈등분쟁을 겪게 될 경우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 FAO는 농자재 관련 분쟁, 농업금융 등 농업인들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이슈들을 전문적 분쟁 해결 프로세스(미디어이션)로 해결해왔음

6. 농기자재 관련 Farm implements

농업인이 많은 비용을 들여 설치·사용하는 농기계·기자재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원. FAO의 직원과 농기자재 조사관, 농기자재위원회 등은 농기자재 관련 고충이 잘 처리되도록 하고 미디어이션으로 관련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지원하는 역할. FAO는 앨버타 주의 농기자재 판매

상들에 대한 사업면허도 관리함

7. 농업인 옹호·대변 Advocacy

농업인들과 주정부 간에 가교역할을 하는 한편, 농업인들의 관심사와 의견을 주정부·의회 관계자들에게 전달하면서 농업인 편에 서서 대변자 역할 수행

□ 캐나다 마니토바주 농업부(MAFRI)의 비산문제 대응

- 마니토바주 농업부(Manitoba Agriculture, Food and Rural Initiatives. MAFRI)는 농업인들이 갈등분쟁을 겪을 경우 미디어이션을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특히 농업부 직원들은 항공방제로 농약 비산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당사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대화를 통해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을 이끌며 관련 문서를 제출받아 규정준수 여부 등을 조사-검토하기도 함
 - 필요할 경우 병해충관리규제기관(Pest Management Regulatory Agency. PMRA)이나 연방항공청(Transport Canada) 관계자를 불러 쟁점이나 의문 사항에 대해 확인하기도 함¹⁷⁾
- 이 세 규제기관(MAFRI, PMRA, Transport Canada)은 항공방제에 의한 농약비산 문제가 벌어졌을 때 참여해서 함께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함

16) Farmers Advocate Office. Alberta Agriculture and Forestry. Canada.

17) David Kaminski (Manitoba Agriculture, Food & Rural Initiatives, Crops Branch), Pesticide Drift Incidents – Who Takes Responsibility and When?

앨버타 주 FAO의 비산농약 관련 분쟁처리 안내문¹⁸⁾

농업인지원실(FAO)은 종종 농약 비산으로 농작물과 재산상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전화를 받습니다. 비산 농약에 의한 비의도적 오염은 항공방제, 또는 인접한 농경지의 농약 살포, 지자체나 업체의 방역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농약 비산으로 피해를 본 농업인은 우선 그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가능한 한 철저하게 문서화해야 합니다. 손상된 농작물의 사진을 찍고, 시간, 장소, 풍속 및 방향, 기상조건 등도 기록해두면 좋습니다. 가능하면 비산 농약이 어디에서 온 건지도 찾아보십시오. 앨버타 주의 병충해방제법과 농약비산 관리 지침 등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점검·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개천이나 도로, 보호구역 등에서 유해 잡초가 번식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제초제가 비산하는 등으로 당신의 농경지가 오염되었다고 판단되면 이 시립 스프레이 드리프트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되면 해당 지자체나 담당관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관련법에 따라 지자체와 논의해 비산방지협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인근 토지소유자·농업인 관련

농업인은 자신의 농약 사용으로 인접한 농경지나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토지를 임대할 경우 경작자인 임차인의 농약 사용으로 인근 농경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임차인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계약서에 명확히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인접한 농경지로부터의 농약 비산이 의심되는 경우, 그 농업인과의 안전한 소통 채널을 만들 것을 권합니다. 아울러 향후 언제, 어디에서, 어떤 농약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이웃 농업인에게 알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농약방제 전문 업체(Custom Applicator)

농약 방제·살포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 업체에 의뢰하면 농약 비산 등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의뢰하는 농업인은 인접한 농경지에 대한 고려 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전문 업체에 알려줘야 합니다. 맞춤형 분무기는 해당 기

관(AEP)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농약살포를 대행하는 25,000 달러 이상의 살충제 비산 책임을 포함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일 전문 업체가 살포한 살충제로 비산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해당 농경지의 주인(농업인)에게 알리고, 농약을 살포한 전문 업체 측과 만나 비산에 따른 피해 문제를 이야기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살충제가 뿌려진 지역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 농약비산으로 의심되는 손해를 입거나 관련 사고를 목격한 경우 AEP 1-800-222-6514로 Environmental Hotline에 신고하십시오.
-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앨버타 농업정보센터 310-FARM(3276) 또는 farmers.advocate@gov.ab.ca를 통해 FAO에 문의하십시오.

□ 호주의 빅토리아 주 분쟁해결센터

- 빅토리아 주 분쟁해결센터(The Dispute Settlement Centre of Victoria)는 시골 지역의 주민(농업인)과 이웃들간 갈등, 농업활동 및 토지사용 관련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는 기관임
- 주로 미디어이션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며, 대체로 미디어이션 한 건당 3시간 정도 소요됨. 복잡한 사건은 몇 주 이상 걸리기도 함
- 해결한 분쟁의 유형은 대단히 다양한데, 비유기농가의 농약 비산으로 유기농가의 채소가 큰 피해를 입게 되자 양측 간에 심각한 분쟁이 벌어졌는데, 분쟁해결센터에서 나서서 미디어이션을 진행한 결과 농작물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데 합의해 원만히 해결됨

18) Albrta FAO, Rural disputes-Suspected spray draft. <https://www.alberta.ca/rural-disputes-suspected-spray-draft.aspx>

3. 유럽의 농업 분야 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 실태

- 1970~80년대 이후 미국에서 먼저 현대적 분쟁해결제도를 개발해 널리 활용하고 효과가 검증되자 근래 유럽에서도 이를 적극 받아들이는 추세
- 2008년 5월 유럽연합(EU)은 “민간 및 상업적 문제에서의 미디어이션 활용을 위한 유럽의회의 지침”(Directive 2008/52/EC. 약칭 Mediation Directive)을 공표하고 회원국들에게 그 이행을 위한 법률을 2011년 5월 까지 만들도록 요구함
- 미디어이션은 유럽에서 근래에 들어서야 도입하고 발전시키는 단계에 있음. 나라 별로 차이가 있는데, 영국과 네덜란드가 빠른 편이고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그 뒤를 잇고 있음
- 농업·농약 분야의 경우 대체로 규제 중심으로 움직이며,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와 같이 현대적 분쟁해결 시스템이 촘촘하게 짜여져 작동하는 수준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음

4. 일본의 농약관리제도와 분쟁조정제도 실태

- 일본은 먼저 충분한 예비적 조치로 기반을 다진 후 2006년에 PLS제도를 도입해서 현재는 성공리에 정착단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됨¹⁹⁾
 - 농약 안전사용을 위한 교육이 농민들에게 충실히 이뤄지고 정부와 지자체가 농약사용기록부를 보급하는 등으로 인해 부적합률이 대단히 낮은 것으로 보고됨
- 일본은 우리의 농협과 같은 조직인 전농의 전국 각 지소에 10명 정도 씩 영농지도사를 배치해 농민들의 농약 안전사용을 유도하고 잔류농약

19) 이규승 외 2017. 주요국의 사례분석을 통한 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 -잔류농약을 중심으로

조사를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농약관리에서 좋은 효과를 얻고 있다고 함

- 분쟁조정제도 면에서는 미국 캐나다와 같은 현대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주로 전통적인 조정 중재 방식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
- 일본정부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기능이 효과적이라 평가하고 주요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아 국민생활센터의 ADR기구 신설 등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짐²⁰⁾

20) 이진숙 (2008), 최근 일본의 소비자행정체계 변화, 소비자정책동향 제1호(한국소비자원)

제5장. 농약 분야 분쟁조정기구 설립 및 운영 방안

-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PLS 시행 전후 국내에서 발생해온 농약 관련 분쟁의 실태와 특성을 토대로, △유사 분야 국내 분쟁조정기구 및 조정제도 현황, △주요 선진국의 농업·농약 분야 분쟁조정기구와 해결절차 등을 참고해 국내 농약 분야 분쟁조정기구의 효과적 설치-운영 방안을 설계해보면 다음과 같음

1. 농약 분야의 전문적 분쟁조정기구 설치 필요성

- PLS 시행을 계기로 농약 등 농자재 분야에서 벌어져온 국내 및 해외의 분쟁 사례와 유형을 조사·분석하고 효과적인 예방·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대한 저변의 요청이 큰 상태
- 향후 항공방제, 비산 등 비의도적 오염에 따른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경우 특히 유기농산물의 친환경 인증취소 문제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임(현재 친환경농산물 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매년 약 2,500~3,000건 내외에 달함)
- 현재 친환경인증 취소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다루는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임.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심판은 시간과 비용이 별로 들지 않고 구속력 있는 결정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농민들의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는 대단히 희박한 실정
 - 국민권익위는 행정심판을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등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농민들에게는 아직도 행정심판을 이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 따라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전 단계에서 그

보다 훨씬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고 공정하고 효과적인 해결절차를 마련할 필요

- 위와 같이 잔류농약 검출로 부적합 처분이나 친환경인증 취소처분을 받아 적지 않은 불이익을 보게 되었을 때 자신의 귀책사유 때문이 아니라 항공방제나 인근 농경지의 농약 비산에 의한 경우, 피해를 본 농업인과 이웃 농업인 또는 해당 업체·기관 간의 분쟁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비산 농약에 의한 비의도적 오염 등으로 농민들 간의 분쟁이 빈발할 가능성에 대비해 간편하고 효과적인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할 필요성도 갈수록 커지는 추세
- 현재 비의도적 농약오염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국에서 현장지원반을 구성하고 ▷1차적으로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2차적으로 농촌진흥청 고객지원담당관실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PLS 시대에 맞게 적극적으로 분쟁해결 역할을 하는 데는 한계
 - 특히 농약 및 농자재 분야에서 벌어지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 요청됨
- 요컨대, PLS제도 시행으로 농약사용기준이 강화되면서 향후 농약 사용과 관련한 농업인들 간의 분쟁이 증대할 가능성이 큰 반면, 현재 적절한 분쟁해결장치가 없는 실정임. 따라서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여 비의도적 오염에 의한 피해구제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지고 농업인들 간의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목적에 맞게 분쟁해결기구의 구성과 위상, 운영 방식 등을 설정함과 동시에, 새로운 기구 도입에 필요한 법령 제·개정안 등을 마련할 필요
- 농약 관련 분쟁유형 중에는 농민이 소비자로서 농약(농자재) 업체와 피

해구제 등의 문제로 다투는 사례들도 있는데, 이런 유형의 분쟁은 한국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별다른 문제없이 다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따라서, 이 유형의 분쟁은 향후 설치-운영할 농약 분야 분쟁조정기구에서 다루지 않는 것으로 설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2. 농약 분야 분쟁조정기구의 역할과 분쟁처리절차

□ 분쟁조정 대상 사건의 범위와 주요 유형

○ 분쟁조정 대상 사건 : 특정 개인·기업·기관이 살포한 농약의 비산 등으로 인해 인근 농경지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문제를 둘러싸고 피해를 입은 농업인과 상대측 간에 벌어지는 다툼(이를 “농약피해분쟁”이라 칭함)을 대상으로 하도록 함

- 잔류농약 검출에 따른 “부적합” 판정이나 “친환경인증” 취소처분 등 공공기관의 행정처분은 본 분쟁조정기구의 처리 대상으로 삼지 않음

○ 분쟁조정기구에서 다루게 될 농약피해 관련 분쟁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음

- 농업인이나 기업·기관이 살포한 제초제 등 농약의 비산으로 인근 농경지의 농작물이 손상되는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잔류농약 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뒤 조사해보니 인근 농경지에서 사용한 농약에 의한 비의도적 오염이 주요인인 것으로 의심(또는 확인)돼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 인근 농경지에서 유래한 것으로 의심(또는 확인)되는 비의도적 오염

으로 인해 ‘친환경’ 인증 취소처분을 받게 되자 그에 따른 피해의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등

- 위와 같은 대상 사건 범위는 분쟁조정기구의 역할·권한을 정하는 핵심 내용이므로 법률로 명확히 정할 필요

□ 분쟁조정 절차

- 비의도적 오염 등 타인의 농약사용으로 인한 피해 관련 분쟁조정절차는 당사자의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된 후 **사실조사**부터 시작해, 우선 **중조(仲調)**에 의해 당사자 간 자발적 합의형성을 유도하고, 합의 도출이 곤란한 경우 **조정(調停)** 또는 **중재(仲裁)**의 방식으로 분쟁이 원만히 종결되도록 하는 순서로 진행
- 분쟁조정위원회는 사건을 접수한 후 3개월 이내에 분쟁조정 절차를 완료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 분쟁조정 신청

- 다른 사람이나 기업 또는 기관 등이 살포한 농약으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오염되는 등 피해(이하 “농약피해”라 함)를 입었다고 보고 분쟁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분쟁조정 신청은 소정의 양식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이뤄지며, 신청서는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에 의해 서면 형태로 접수하거나 위원회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형태로 접수할 수 있음
- 분쟁조정을 신청할 때는 다음의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도록 함

- 타인의 농약 살포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 피해 내역 및 규모(산정 금액)
 - 해당 농약을 살포한 것으로 확인 또는 의심되는 당사자(피신청인)의 특정 및 그 근거자료
-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사람(신청인)은 신청 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차후 분쟁조정과정에서 시료 정밀분석, 피해규모 감정평가 등 별도의 조사에 따른 비용이 소요될 경우 해당 비용의 부담에 동의해야 함
 - 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함
 - 공공기관이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함

2. 사실조사

- 위원회는 조정신청 사건의 개요와 주요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관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도록 함
- 각 분쟁사건에 대한 사실조사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1. 신청인과 피신청인 등 주요 관련 당사자들의 인적 사항 및 상호관계, 농경지 위치 등
 2. 농약피해의 구체적 내용 : 해당 농약 품명과 성분, 피해 농작물과 피해 세부 내용, 전체적인 피해 규모 및 액수 등
 3. 농약피해의 책임 소재 및 인과관계의 규명
 4. 주요 쟁점사항 및 각 쟁점에 대한 당사자들의 입장, 희망사항 등
- 조사관은 현장을 방문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그 외 관련된 자들과 주무관청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 농약피해에 관한 기본적인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분쟁조정 신청인에게 있음. 신청인은 사실조사 등 분쟁조정과정에서 위원회가 요구하는 농약피해에 관한 입증자료(사용 농약·농자재, 농산물·토양·용수의 오염 관련 공인분석자료 등)를 제출해야 하며, 피해의 원인과 책임 소재 및 그 규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 조사분석 등이 필요할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함
- 조사관은 사실조사 후 보고서를 작성해 사무국장과 위원장에게 보고
- 조사관은 사실조사 이후 중조·조정·중재 등 분쟁조정 과정에서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중조·조정·중재회의에 출석해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중조·조정·중재위원의 질의에 응답해야 함
- 위원회는 분쟁 사안에 대한 사실조사 및 이후 진행되는 분쟁조정과정에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기술적 지식의 제공, 농약오염물질의 측정 및 분석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함

3. 중조에 의한 합의형성

- 위원회는 앞의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선 관련 당사자들간 자발적 합의를 유도해 해당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지원함
 -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형성을 위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사안의 중조(仲調. Mediation) 절차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중조위원을 3인 이내로 지명
- 중조위원은 분쟁 당사자들과의 대화를 진행하면서 쟁점을 해소하고 상생적 해결책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
- 중조과정에서 당사자들 간 합의가 도출되면 중조위원은 합의서를 작성

하여 당사자들의 확인 및 서명을 받고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 절차를 종료함

- 중조위원과 당사자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도저히 합의 도출이 힘들 경우 중조위원은 중조과정을 종료할 수 있음

○ 중조절차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당사자들에게 다음 절차로서 조정 혹은 중재에 의해 해결하도록 권유

- 위원회의 권유에 당사자들이 동의하면 조정 혹은 중재 절차로 넘어가고, 그렇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분쟁조정과정을 종료함

4. 조정(調停. Conciliation)

○ 당사자들간 합의 형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의 권유로 양측 당사자들이 조정에 동의하면 위원회는 조정 절차를 시작

○ 조정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단이 주관하여 진행

-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해당 사건의 성격을 감안해 공정성과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조정위원 3명을 선정해 조정위원단을 구성

○ 조정위원단은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거나, 또는 조정위원단이 직접 분쟁 현장을 실사하거나 문헌자료를 조사·열람하고 관련 당사자,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음

- 조정위원단은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상호 합의 하에 공정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들에게 제시

○ 조정위원단이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당사자들이 모두 수락하면 조정위원단은 소정의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및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고 모든 절차가 종료됨

- 당사자 모두 또는 한쪽이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조정은 불성립하고 해당 사건의 분쟁조정 절차는 종료됨

5. 중재(仲裁. Arbitration)

- 앞의 “3. 중조과정”에서 당사자들간 합의 형성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위원회의 권유로 당사자들이 모두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에 동의하면 위원회는 중재 절차를 시작함
- 중재 절차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단이 주관하여 진행
 -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해당 사건의 성격을 감안해 공정성과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중재위원 3명을 선정해 중재단을 구성
- 중재단은 분쟁의 중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거나, 또는 중재단이 직접 분쟁 현장을 실사하거나 문헌자료를 조사·열람하고 관련 당사자,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음
 - 중재단은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상호 합의 하에 공정한 중재판정을 작성하여 당사자들에게 제시
- 분쟁의 당사자들은 애초에 동의한 대로 중재단의 중재판정에 대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수용해야 함
 - 중재단의 중재판정서에 당사자 및 중재단 전원이 서명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중재절차가 종료됨
- 중재절차의 진행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중재판정 수용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이로써 해당 사안의 분쟁조정절차는 모두 완료하게 됨

3. 농약 분야 분쟁의 효과적 해결 접근법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약 분야의 주요 분쟁 유형별로 효과적인 해결 프로세스 설계하고 이러한 프로세스를 주축으로 하는 체계적인 분쟁해결절차와 제도를 마련할 필요
-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농업 및 농약 분야 분쟁해결에 주로 활용해온 미디어이션(Mediation) 등 현대적인 갈등분쟁 해결프로세스와 기법을 적극 도입-활용
- 이런 프로세스와 스킬을 농약 분야 분쟁해결과정에 효과적으로 적용-활용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형성하고, 조정위원과 조사관 등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기회 마련

□ 농약 관련 분쟁 유형과 특성에 맞는 접근법 적용

- 농약 관련 분쟁을 갈등요인 별로 여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에 맞는 해법을 적용해 효과적 해결 모색
 - 여섯 가지 갈등유형 : 이해관계 갈등, 가치관 갈등, 휴먼니즈갈등, 사실관계 갈등, 상호관계 갈등, 구조적 갈등
- 농약(농자재) 관련해 벌어지는 대부분의 분쟁은 주로 이해관계갈등의 성격을 띠. 그러나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므로 사안을 다룰 때 주의할 필요
- 특히 친환경인증 취소처분 관련 분쟁의 경우, 취소처분을 당한 농민들은 경제적 피해도 크지만 그보다도 친환경 농업을 정착시키기 위해 오랫동안 분투해온 자신의 진정어린 노력이 무시되고 폄훼되는 데 대해 더 큰 좌절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함

-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취소처분을 통보받을 때 친환경인증만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부정당하는 느낌에 억울함과 분노를 견잡을 수 없게 된다고 함

- 이는 인간에게 그 어떤 이해관계나 가치관보다 더 중요한 휴먼 니즈(Human Needs)가 침해되는 데 따른 것으로서, 이런 분쟁이 경우에 따라 다분히 **니즈갈등의 성격**을 띠 수도 있음을 보여줌

- 따라서, 이러한 분쟁을 다룰 때는 금전적 피해나 보상방법 같은 이해관계 문제와는 별도로 당사자들이 지니고 살아온 가치와 휴먼 니즈를 존중하고, 결코 그것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풀어나갈 필요

- 비의도적 농약오염 등에 따른 피해 문제 등 이해관계를 다투는 분쟁의 경우 대부분은 **사실관계**를 어떻게 규명하느냐가 핵심 관건이 됨

- 신속하고 수용성 높은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장치와 절차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분쟁해결기구 설치-운영 및 조정위원회 활동의 핵심 요소가 될 수밖에 없음

- **사실관계 갈등**은 크게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음

1) 중립적 사실조사 (Neutral Fact-finding) : 분쟁조정기구의 조사관, 또는 농관원이나 농촌진흥청, 지역 센터 등에 의한 조사 또는 실험 의뢰 등

2) 공동조사 (Joint Fact-finding) : 다툼이 되는 사안의 이해관계 너무 크거나, 또는 당사자가 농관원 인증기관 등 중립적 제3자의 조사를 신뢰하지 않을 경우 양측 당사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을 통해 공동조사단을 만들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쟁점 해소

- 이러한 분쟁조정과정에서 간과해선 안 될 중요한 점을 명심할 필요. 즉, 비의도적 오염을 비롯한 농약 관련 분쟁은 대부분의 경우 같은 농업공동체 안에서 이웃 간 관계 위에서 벌어지는 갈등사건이란 사실임

- 이웃 간 관계가 좋을 때는 서로 양보하며 어지간한 문제는 덮고 넘어가게 되나,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이웃 농민이 **의도적으로 ‘비의도적 오염’**을 야기하는 경우도 왕왕 벌어지는 것이 농촌의 현실임

○ 따라서, 향후 농약 분야 분쟁조정위원회가 활동할 때 기존의 다른 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구제와 보상에 초점 맞추는 것과는 결을 달리할 필요가 있음

- 즉, 갈등유형 별로는 대체로 이해관계 갈등보다 **상호관계 갈등**의 측면이 중요하며, 경제적 보상 문제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이웃 간 “관계”의 측면을 주목하고 거기서 갈등의 해법을 모색하는 방식의 접근법이 필요하고 또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할 것임

○ 그런 연장선상에서, 특히 비산, 비의도적 오염 등 이웃 농민들 간의 문제를 다룰 때 참고하고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은 “**상린관계**”라는 법리적 문제

※ 상린관계²¹⁾

-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 또는 이해자 상호간에 있어서 각 부동산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하여 서로 그 권능을 일정한 한도까지 양보 · 협력하도록 규정한 법률관계를 말함(민법 제215~244조)

- 인접한 부동산의 소유자가 각자의 소유권을 무제한으로 주장한다면 그들의 부동산의 완전한 이용을 바랄 수 없으므로 각 소유권 또는 이용권의 내용을 일정범위 안에서 제한하고 각 소유자로 하여금 협력시키는 제도

- 건물구분소유(제215조) · 통행(제219조) · 배수(排水)와 유수(流水)(제221, 222조) · 경계(제237, 239조) · 경계 넘는 수목(제240조) · 건축방법(제242, 243조) · 인지사용(隣地使用)(제216조) · 안온방해금지(제217

21) 이병태 (2016), 법률용어사전. 법문북스.

조)에 관한 것 등이 있음

- 민법의 상린관계 규정은 이웃 간의 특별한 계약이 없을 때 적용되는 최소한의 규약으로서, 서로의 농지가 맞닿은 이웃농민들 간에도 이런 밑바탕에서 상호 협조하고 배려하는 선린관계를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조정활동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과적일 것임

4. 농약피해 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 방안 비교검토

○ 농약피해 관련 전문적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은 우선 그 형태와 위상 면에서 다음 세 가지 안을 고려할 수 있음

□ A안. 농촌진흥청 산하에 상설기구로 설치·운영

○ 한국소비자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대다수 조정위원회의 경우와 같이 일정 수의 상임/비상임 조정위원과 조사관들 그리고 사무국 등 지원 부서를 갖추고 상설기구로 운영

○ 농촌진흥청 산하에 농자재 관리 분야의 독자적 위원회로서의 위상을 갖도록 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각 지자체 산하 농업기술센터 등 분야별 전문기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고 일하도록 하되, 분쟁해결과정에서 독립성 및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할 필요

- 이는 특히 안전성 검사나 친환경인증에 대한 행정처분 등과 관련해 벌어진 분쟁을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하는데 필수적

○ 조정위원은 위원장과 1~2인의 위원만 상임으로 하고, 그 외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비상임 위원으로 위촉

-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농업·농약 및 갈등·분쟁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농촌진흥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
 1. 1~3급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재직한 사람
 4. 농업 또는 농약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농업인단체 또는 농업·농약 분야 협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5. 갈등·분쟁·민원 해결 분야 전문가로서 5년 이상 활동해온 사람
- 실제 사안을 맡을 조정위원단을 꾸릴 때에는 위 비상임 조정위원단에서 해당 사안의 성격에 맞게 분야별로 위원들을 선정해 공정하고 전문성 있게 구성
- 농약 관련 분쟁조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사실관계에 대한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조사작업임. 따라서 농약 및 농업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조사관들을 위원회 내에 핵심 상근 인력으로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위원회 내에는 조사관들 외에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할 요원들로 사무국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규모와 인력은 유사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참고하되 향후 담당할 업무량에 맞춰 결정
- 농촌진흥청 산하에 의무적으로 농약피해 관련 분쟁조정기구(중앙 차원)를 설치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지역 별로 지방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지방분쟁조정기구는 광역자치단체 단위, 또는 2~3개 광역단체를 포괄하는 권역별로 설치하도록 하되, 그 형태와 편제는 크게 두 가지 방안

을 검토할 수 있음

(1) 농약피해 분쟁조정위원회 산하에 지역별 지부(지방분쟁조정위원회) 형식으로 설치

(2) 농촌진흥청의 농약 관련 업무를 각 지역에서 수행하는 것은 각 지자체 산하 농업기술원임. 농약피해 관련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농촌진흥청에 설치한 것처럼,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농업기술원에 설치하는 것이 업무 흐름 및 협업 차원에서 적합할 수 있음

○ 지방분쟁조정기구의 구성과 역할, 분쟁조정 절차 등은 중앙분쟁조정기구에 준하도록 함

※ [참고1]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상임, 나머지는 비상임
- 비상임위원 분포 : 소비자대표 21, 사업자대표 14, 분야별 전문가 54, 변호사 28 등 총 117명
- 분쟁조정사무국 구성 : 분쟁조정총괄팀, 조정1팀, 조정2팀, 조정3팀
- 분쟁조정사무국의 주요 기능 :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 운영
 - 분야별 전문위원회 운영
 - 분쟁조정제도 개선
 - 분쟁조정사건 처리
 - 지방위원회 개최
 - 전자분쟁시스템 구축·운영 등

※ [참고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 : 상임위원(위원장)과 비상임위원 29인으로 구성
- 분야별 전문가 265명으로 조정위원 풀 구성
- 사무국 : 사무국장 산하에 운영지원팀, 고객지원팀, 심사1팀, 심사2팀, 심사3팀, 심사4팀으로 구성 (국장 1, 팀장 5, 사무관 2, 주무관 12명 등 직원 총 22명)

□ B안. 우선 비상설기구 형태로 출범 후 점진적 확대 및 상설화

- A안과 같이 농약 분야 전문 분쟁해결기구를 가능한 속히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공공영역에서 새로운 기구를 만들고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인력과 예산을 배정받는 것은 지난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중대사임
- A안 추진이 여의치 않거나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경우 “플랜B”로 과도기적 경로를 생각해볼 수 있음. 즉, A안과 유사하게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되, 대부분의 인력을 비상임으로 하여 일종의 심의위원회나 자문위원회와 같이 필요시에만 소집되는 비상설 기구로 운영
- 이 경우, “제6장 나. 대통령령 및 훈령 개정에 의한 추진방안”에서 상술한 것과 같이 『농약관리법 시행령』 또는 『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농약피해 분쟁조정기구의 설치 근거와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
 - 분쟁조정기구 구성-운영에 관한 대부분의 내용은 ‘제6장 나’에서 제시한 개정안대로 하되, 우선 비상설기구로 운영하는 데 따른 사항만 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임

- 초기에 비상설기구로 운영할 경우 원안(A안. 상설기구)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사무국의 설치 및 조사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임
- 농약피해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주요 소관업무는 다음과 같음
 - 분쟁조정 사건의 접수 및 후속 조정절차에 필요한 업무 처리
 - 농약피해 및 분쟁조정절차 등에 대한 상담 및 민원 대응
 - 농약피해분쟁의 해결에 필요한 사실조사와 인과관계의 규명
 - 농약피해 내역 및 금액의 산정
 -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 비상설기구로 운영하는 기간에 위와 같은 사무국의 기능은 농촌진흥청의 관련 부서(고객지원담당관 및 농자재산업과)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분쟁조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무국의 조사관에 의한 사실관계 조사작업임. 비상설기구로 운영할 경우 자체 조사관이 없기 때문에, 1) 위원회 주관 하에 사안 별로 해당 분야에서 공정성·신뢰도·권위를 인정받는 기관에 조사·분석 등을 의뢰하거나, 또는 2) 농촌진흥청 또는 각 지역 농업기술원의 관련 부서 직원들이 겸임 형태로 조사관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이밖에, 위원회 **위원**들의 경우 비상설기구로 할 경우에도 A안에 의한 상설기구의 경우와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음
 - 상설기구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주로 외부의 독립적 전문가들을 **비상임** 조정위원으로 위촉하고 조정할 사건이 있을 때 조정위원단을 구성해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며, 비상설기구의 경우에도 이러한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될 것임

□ C안. 대학·전문기관 등에 위탁운영

- 법제도 정비, 인력 충원 등이 당분간 힘들 경우 미국에서와 같이 농약 분야의 전문적 분쟁조정 업무를 대학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대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만함
 - 근래 국내 지역행정 등 공공분야에서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진적 행정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할 때 민간위탁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 대학, 연구소 등 수탁기관은 B안에서와 같이 분야별 전문가들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공정하게 구성하고 효과적으로 운영
- 잔류농약 검출, 경로 확인 등 사실관계에 대한 전문적 조사가 필요할 경우 농관원 및 인증기관, 농진청 및 농업기술센터 등의 협조를 받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장치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 일정 기간 민간위탁으로 시범 운영하다가 효과성이 입증되고 현장의 수요도 점차 증가하면 위 A안으로 전환해 추진

□ 종합 검토 및 추진 방안

- 위 세 방안은 각각 장단점이 있음. 특히 C안의 경우, 정부로서는 해당 기구 설립 등 초기 부담을 크게 절감하는 장점이 있으나, 이 사안의 경우 적용에 애로점이 적잖을 것으로 보임
 -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첫째, 미국과 같은 체계적 분쟁해결시스템과 문화, 전문적 역량이 갖춰져 있지 않아 민간위탁이 쉽지 않고 그에 따른 효과도 장담하기 힘들 가능성. 둘째, 농약피해분쟁의 해결 과정에는 이 분야 전문기관에 의한 과학적 사실관계 조사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민간위탁으로 외주화할 경우 해당 기관이 전문적 기술지원을 받는 데 제약이 클 수 있음

- 이런 요인과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현실적인 경로는 다음 두 가지 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임
 - 1) A안을 소규모로 시작해 점차 효과와 수요를 확인하면서 확대해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거나 또는,
 - 2) 우선 B안으로 시작. 즉, 농촌진흥청 산하에 비상설기구로 가칭 ‘농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다가 효과가 검증되고 신청사건이 많아지는 등 필요할 경우 상설기구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음. 별도의 설치법을 제정하거나 또는 기존 법률에 기구 설치 근거 조항을 두는 것임
- 현재 국내에 설치돼 있는 각 분야의 분쟁조정기구는 총 55개(2014년 법무부 집계자료). 대부분의 경우 관련 법률에 분쟁조정기구 설치 근거 조항을 두고 있으나,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분쟁조정 절차를 정한 경우도 네 기구가 있음
 - 환경분쟁조정법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언론중재위원회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처음부터 A안으로 하고자 할 경우, 위와 같이 별도의 설치법을 마련하거나, 또는 농약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해 설치 근거를 확고히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5. 농약 분야 분쟁조정기구 설치 위한 법규 제정방안 비교검토

- 농약 분야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법규를 만드는 일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검토-추진 가능
 - 1. **별도 설치법 제정** : 농약피해분쟁조정기구 설치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
 - 2. **기존 법 개정** : 농약관리법을 개정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마련. 분쟁조정위 구성·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시행령·시행규칙·운영규정 등으로 규정
 - 3. **기존 시행령 개정** : 농약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마련. 분쟁조정위 구성·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시행령·시행규칙·운영규정 등으로 규정
- 위와 같은 세 가지 방안의 장단점 및 실현가능성을 검토·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1. 별도 설치법 제정 방안

- 어떤 분야에서든 분쟁조정기구의 위상과 물적 토대, 활동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분쟁조정 효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설치법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전형적인 피해구제 분야의 분쟁조정기구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조정법),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인 사례
- 별도의 설치법을 갖게 되면 분쟁조정기구 설치의 원동력이 장착되고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결정적 장

점

- 아울러, 분쟁조정절차의 효과적 운용이 필요한 법률적 장치를 종합적으로 구비할 수 있게 돼 조정활동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유리
 - 분쟁조정절차에 대한 법률적 기반을 갖추게 되면 분쟁조정기구가 조정과정에서 필요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분쟁 당사자나 관련 기관에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분쟁조정활동의 효력을 높일 수 있음
 - 예컨대 비의도적 오염의 유발자로 의심되는(지목된) 상대측(피신청인)으로 하여금 분쟁조정절차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해당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에 응하도록 법률로 강제할 수 있게 되면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음
- 분쟁 당사자들간 자율적 합의가 불가할 경우 직권조정이나 재정결정과 같이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조속히 매듭짓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
- 그러나 비의도적 오염 등에 따른 농약 관련 분쟁이 벌어지는 빈도와 규모, 심각도 면에서 분쟁조정기구 설치를 위한 독자적인 법률 제정을 추진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체적이기에 실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임

2. 농약관리법 개정으로 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 근거 마련

-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별도의 설치법을 제정하지 않고 기존의 농약관리법을 개정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음
 - 새로운 법 제정의 난관은 피하면서 분쟁조정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법률적 요건은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

- 기존의 농약관리법 체제를 감안할 때 분쟁조정기구의 설치 및 분쟁조정의 효력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 항목들, 즉 △비의도적 오염 등에 의한 농약피해 관련 분쟁조정기구의 설치 근거 △분쟁조정의 대상 및 범위 △분쟁조정기구의 기능과 권한 △분쟁조정과정에서 관련 당사자 및 공공기관의 의무 등에 대한 조항을 마련하고, 분쟁조정절차 진행 등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행령·시행규칙·운영규정 등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3. 법률 아닌 시행령·훈령으로 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 근거 마련

- 분쟁조정기구의 위상과 권한을 확보하고 분쟁조정의 효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위의 방안1, 2와 같이 관련 법 제정 또는 개정으로 법률적 기반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그러나 국회의 입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실현가능성 면에서도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큰 실정
 - 그와 달리, 정부 차원에서 처리 가능한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농약 분야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참고로,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경우, 모법인 『농약관리법』이 아니라 『농약관리법 시행령』(제11~18조)에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구성·운영의 세부 사항은 농촌진흥청훈령인 『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에서 정해놓고 있음
- 농약 분야 분쟁조정기구도 이와 같이 농약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고, 분쟁조정위 구성·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마련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음
 - 『농약관리법』 제23조는 ‘농약 등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경우와 같이 농약 분야 분쟁조정기구도 이 조항에 터 잡아 시행령에 근거 조항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이렇게 할 경우 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기관 및 공무원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나, 분쟁 당사자 등 일반 국민에게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음

제6장. 농약 분야 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 규정(안)

- 앞에서 살펴본 대로, 농약 분야 분쟁조정기구 설치를 위한 법규를 마련하는 세 가지 방안 중 “1. 별도의 설치법 제정” 방안은 현실적인 장벽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제외하고, 다른 두 가지 방안 즉, “2. 농약관리법 개정 방안”, 또는 “3. 농약관리법 시행령 및 농촌진흥청훈령 개정 방안”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삼아 집중 검토함
- 이 두 가지 방안에 의해 농약 분야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법규를 마련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1. 농약관리법 개정으로 분쟁조정기구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안

- 현행 『농약관리법』을 개정해 농약피해 분쟁조정기구의 설치 근거 및 주요 법률조항을 마련하는 방안은 두 가지가 있음
- 1) 『농약관리법』 제23조의 4를 신설해 농약피해 분쟁조정기구의 설치 근거 마련
 - 현행 농약관리법 체제를 감안해 기존의 다른 조문들의 일련번호 변경 등 개정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
 - 『농약관리법』 제23조는 ‘농약 등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대해 정하고 있음
 - 제23조(농약 등의 안전사용기준 등)
 - 제23조의2(판매·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 등)
 - 제23조의3(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 위 조문에 이어 “제23조의 4” 조항을 신설해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의 근거와 역할·권한, 분쟁조정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한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
- 이 경우, 농약관리법의 현 체계에 부합하고 기존 조항의 일련번호를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한 개의 조문에 농약피해 분쟁조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모두 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점이 결정적인 문제임

2) 『농약관리법』에 새로운 장을 신설해 분쟁조정기구 설치근거 및 주요 조문 마련

- 현행 『농약관리법』은 6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는데, “제4장 농약의 유통관리 등” 다음에 제5장으로 농약피해 분쟁조정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주요 조문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
 - 그럴 경우 기존의 “제5장 보칙”과 “제6장 벌칙”의 ‘장’ 및 ‘조’의 일련번호를 순차적으로 변경
 - 『농약관리법』에 신설되는 “제5장 농약피해 분쟁조정위원회”에는 분쟁조정기구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분쟁조정절차의 진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 즉 △농약피해 관련 분쟁조정기구의 설치 근거 △분쟁조정 대상 및 범위 △분쟁조정기구의 기능과 권한 △분쟁조정과정에서 관련 당사자 및 공공기관의 의무 등에 대한 조항을 두도록 함
 - 그 외, 분쟁조정기구의 구성-운영 및 분쟁조정절차 진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행령·시행규칙·운영규정 등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이 농약관리법에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시행령 및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농약관리법』(개정안)

제5장 농약피해 분쟁조정위원회

제26조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설치)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약사용과 관련한 농업인간의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농약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농업인들 간 선린관계와 건전한 농업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7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약피해”란 개인·기업·기관 등의 농약 사용으로 인해 인근 농업인에게 농작물 오염 등에 의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을 말한다.
2. “농약피해분쟁”이란 농약피해를 둘러싸고 농약 사용자(사용자로 의심되는 경우 포함)와 피해자 간에 발생한 다툼을 말하며, 잔류농약 검출 등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그와 관련한 공공기관과의 다툼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분쟁 조정(調整)”이란 농약피해분쟁에 대해 중조(仲調), 조정(調停), 또는 중재(仲裁)의 방식으로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는 절차를 말한다.
4. “중조(仲調)”는 갈등·분쟁해결 전문가가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서 대화를 통한 상호이해 및 문제해결과정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자발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갈등·분쟁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하는 과정(Mediation)을 말한다. 중조에 의한 당사자간 합의는 재판상 화해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다.
5. “조정(調停)”은 분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주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조정위원들이 조정안을 제시해 당사자들에게 수락을 권유하

는 절차(Conciliation)를 말한다. 당사자들이 모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고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이 불성립된다. 이 법에 의한 조정 성립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6. “중재(仲裁)”는 양측 당사자들의 사전 동의에 의해 제3자(중재단)의 결정(중재판정)으로 분쟁을 매듭짓도록 하는 절차(Arbitration)를 말한다. 이 법에 따른 중재판정은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다.

7. “다수인관련분쟁”이란 같은 원인으로 인한 농약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5인 이상의 다수(多數)인 농약피해분쟁을 말한다.

제28조(위원회의 소관사무)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약피해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의 해결절차 운영
2. 농약피해와 관련되는 민원의 상담 및 조사연구
3. 농약피해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4. 농약피해의 예방 및 구제와 관련된 교육, 홍보 및 지원

제2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상임위원은 2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0조(위원의 임명) ① 위원회의 위원은 농업·농약 및 갈등·분쟁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농촌진흥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1. 1~3급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재직한 사람

4. 농업 또는 농약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농업인단체 또는 농업·농약 분야 협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5. 갈등·분쟁·민원 해결 분야 전문가로서 5년 이상 활동해온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이나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

제32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관여한 경우

②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

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한다.
-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3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국장과 협의하여 각 분쟁사건의 중조·조정·중재 절차를 담당할 위원 또는 위원단을 선정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할 조사관들을 둔다.

- 1. 분쟁의 해결에 필요한 사실조사와 인과관계의 규명
- 2. 농약피해액의 산정 및 산정기준의 연구·개발
-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③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을 보좌한다.

④ 위원장은 특정 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를 위촉하여 제②항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분쟁조정 신청) ① 타인의 농약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농촌진흥청 훈령으로 정하는 양식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분쟁조정신청서는 방문, 우편, 또는 전자우편에 의해 서면 형태로 제출하거나 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형태로 제출한다.

제36조(분쟁조정 절차 및 시한 등)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서를 받았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는 사실조사부터 시작해, 우선 중조(仲調)의 방식으로 당사자간 자발적 합의형성을 유도하고, 합의 도출이 곤란한 경우 조정(調停) 또는 중재(仲裁)의 방식으로 분쟁이 원만히 종결되도록 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③ 위원회는 사건을 접수한 후 3개월 이내에 분쟁조정 절차를 완료하도록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7조(출석 요구) ① 위원회는 신청인, 피신청인 등 분쟁 당사자에게 제 36조 제2항의 분쟁조정절차 진행을 위한 기일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38조(사실조사) ① 위원회는 조정신청 사건의 개요와 주요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관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도록 한다.

② 각 분쟁사건에 대한 사실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 등 주요 관련 당사자들의 인적 사항 및 상호관계, 농경지 위치 등
 2. 농약피해의 구체적 내용 : 해당 농약 품명과 성분, 피해 농작물과 피해 세부 내용, 전체적인 피해 규모 및 액수 등
 3. 농약피해의 책임 소재 및 인과관계의 규명
 4. 주요 쟁점사항 및 각 쟁점에 대한 당사자들의 입장, 희망사항 등
- ③ 조사관은 현장을 방문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그 외 관련된 자들과 주무관청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④ 조사관은 사실조사 후 보고서를 작성해 사무국장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 ⑤ 조사관은 사실조사 이후 중조·조정·중재 등 분쟁조정 과정에서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중조·조정·중재회의에 출석해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중조·조정·중재위원의 질의에 응답해야 한다.

제39조(관련 기관의 협조) ① 위원회는 분쟁 사안에 대한 사실조사 및 이후 진행되는 분쟁조정과정에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기술적 지식의 제공, 농약 오염물질의 측정 및 분석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거나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40조(신청의 변경 또는 각하) ① 위원회는 제38조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신청인으로 하여금 애초의 분쟁조정 신청내용을 변경하거나 흠결을 바로잡도록 할 수 있다.

- ② 신청인이 적법하지 않은 분쟁조정 신청을 하거나 또는 위원회의 제1항의 요구에 대해 신청인이 타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은 해당 분쟁조정 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제41조(당사자간 합의형성) ① 위원회는 제38조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선 관련 당사자들간 자발적 합의를 유도해 해당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만한 합의형성을 위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사안의 중조(仲調) 절차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중조위원을 3인 이내로 지명한다.

제42조(중조위원의 임무) ① 중조위원은 분쟁 당사자들과의 대화를 진행하면서 쟁점을 해소하고 상생적 해결책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② 제1항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조위원은 편파적인 면 없이 양측 당사자 간에 중립을 지키면서 최대한 원만하고 공정하게 분쟁이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3조(중조절차의 종료) ① 중조과정에서 당사자들 간 합의가 도출되면 중조위원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들의 확인 및 서명을 받고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로써 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된다.

② 중조위원과 당사자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도저히 합의 도출이 힘들 경우 중조위원은 중조과정을 종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중조절차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당사자들에게 다음 절차로서 조정 혹은 중재에 의해 해결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양측 당사자들이 동의하면 조정 또는 중재 절차로 넘어가고, 그렇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분쟁조정과정을 종료한다.

제44조(조정절차의 개시) 당사자들간 합의 형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4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당사자들이 조정에 동의하면 위원회는 조정 절차를 시작한다.

제45조(조정위원단 구성) ① 조정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단이 주관하여 진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해당 사건의 성격을 감안해 공정성과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조정위원 3명을 선정해 조정위원단을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 3명 중에서 독립적이고 분쟁해결 전문성이 높은 위원을 조정위원단장을 지명하고 조정위원단 및 조정절차를 원활히 이끌도록 한다.

제46조(조정위원단의 의사결정) 조정안 작성을 포함한 조정위원단의 모든 의사결정은 조정위원 전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7조(조정활동) ① 조정위원단은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거나, 또는 조정위원단이 직접 분쟁 현장을 실사하거나 문헌자료를 조사·열람하고 관련 당사자,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단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토대로 상호 합의 하에 공정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들에게 제시한다.

③ 제1항의 조정안을 준비 또는 작성하는 과정에서 조정위원단은 가급적 당사자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내용을 다듬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제48조(조정의 성립) ① 제47조 제2항에 의한 조정안에 대해 당사자들이 모두 수락하면 조정위원단은 소정의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및 조정위원 전원이 서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조서를 당사자 및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고 모든 절차가 종료된다.

제49조(조정의 불성립) 제47조 제2항의 조정안을 당사자 모두 또는 한쪽이 거부할 경우 조정은 불성립하고 해당 사건의 분쟁조정 절차는 종료된다.

제50조(중재절차의 개시) 제41~42조의 중조과정에서 당사자들간 합의 형성이 이뤄지지 않아 제4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당사자들이 모두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에 동의하면 위원회는 중재 절차를 시작한다.

제51조(중재단 구성) ① 중재 절차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단이 주관하여 진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해당 사건의 성격을 감안해 공정성과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중재위원 3명을 선정해 중재단을 구성한다. 단,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중재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재위원 3명 중에서 중립적이고 분쟁해결 전문성이 높은 위원을 중재단장으로 지명하고 중재단 및 중재절차를 원활히 이끌도록 한다.

제52조(중재단의 의사결정) 중재판정문 작성을 포함한 중재단의 모든 의사결정은 중재단 전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3조(중재활동) ① 중재단은 분쟁의 중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거나, 또는 중재단이 직접 분쟁 현장을 실사하거나 문헌자료를 조사·열람하고 관련 당사자,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중재단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토대로 상호 합의 하에 공정한 중재판정을 작성하여 당사자들에게 제시한다.

제54조(중재절차 종료) ① 분쟁의 당사자들은 애초에 동의한 대로 제53조 제2항에 의한 중재판정에 대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수용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재판정문에 당사자 및 중재단 전원이 서명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중재절차가 종료된다.

제55조(중재 불성립 및 종료) ① 중재절차의 진행과정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중재판정 수용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중재에 대한 불복과 중재의 취소에 관하여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한다.

③ 당사자가 제1항과 같이 할 경우 해당 사안의 분쟁조정절차는 모두 종료된다.

제56조(다수인관련분쟁) ① 5인 이상의 다수인에게 같은 원인으로 농약피해가 발생하여 분쟁조정신청을 할 경우 그 중에서 3인 이내의 대표당사자를 선정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분쟁조정 효력은 대표당사자 그리고 다수인관련분쟁에 참가를 신청한 자에게만 미친다.

제57조(추가 참가) ① 분쟁조정절차가 이미 진행되는 과정에서 동일한 원인에 의한 농약피해를 주장하는 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당사자로서 추가로 해당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추가 참가자가 5인 이상일 경우 제56조에 의한 다수인관련분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58조(대리인) ① 분쟁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3. 변호사

②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당사자는 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9조(비공개 원칙) ① 위원회가 수행하는 모든 분쟁조정절차는 별도

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외적으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과 조사관 등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조정비용 등) ①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위원회가 진행하는 사실조사 등 분쟁조정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른 규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당사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국가는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1조(준용 규정) 농약피해 분쟁조정 절차와 관련해 이 규정에 특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사조정법과 중재법, 그리고 환경분쟁조정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벌칙·과태료

제00조(벌칙) 제59조의 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0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7조의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39조의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나 협조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부과·징수한다.

2. 대통령령 및 훈령 개정에 의한 추진 방안

- 위와 같이 관련 법률(농약관리법)을 개정해 농약피해 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바람직하나, 바로 실현하기 힘들 경우를 대비해 현실적인 차선책을 검토할 필요
- 이 방안으로 추진할 경우, 분쟁조정기구의 권한이나 조정절차의 집행력 면에서 명백한 한계가 있긴 하나, 농약피해분쟁의 원만한 조정 및 타결을 도모하는 본연의 역할은 대부분 수행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유사한 예로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경우, 『농약관리법』이 아니라 이 법 시행령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음
 - 『농약관리법』 제23조는 ‘농약 등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대해 정하고 있음. 이를 바탕으로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11~18조에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가 만들어져 있음
- 농약 분야 분쟁조정기구도 같은 방식으로 『농약관리법 시행령』에 설치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분쟁조정기구의 구성·운영을 위한 세부 내용은 농촌진흥청 훈령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차원에서 『농약관리법 시행령』 및 『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농약관리법 시행령』(개정안)

- 현행 『농약관리법 시행령』은 제11~18조에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해 정하고 있으며, 제19조는 ‘농약 등의 안전사용기준’을 정하고 있음
- 현행 시행령에 “제19조2”를 신설해 다음과 같은 조문을 삽입하도록 함

『농약관리법 시행령』(개정안)

제19조2(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약사용과 관련한 농업인간의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농약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농업인들 간 선린관계와 건전한 농업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다른 사람이나 기업, 기관 등이 살포한 농약으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오염되는 등 타인의 농약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관련된 자, 관계기관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의견을 듣고, 중조(仲調)·조정(調停)·중재(仲裁) 등 분쟁조정을 위한 회의를 진행한다.

④ 위원회는 신청인, 피신청인 등 분쟁 당사자에게 제3항의 분쟁조정을 위한 기일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 및 분쟁조정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기술적 지식의 제공, 농약오염물질의 측정 및 분석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러한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 ⑥ 위원회의 모든 분쟁조정 절차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외적으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 및 조사관은 직무상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국가는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⑧ 위원회는 제2항의 분쟁조정신청을 하는 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과정에 별도의 비용이 들 경우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 ⑨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촌진흥청훈령으로 정한다.

□ 『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개정안)

- 『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농촌진흥청훈령 제1176호)은 “제2장 농자재 관련 위원회 운영규정”에서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 유기농업자재 허용물질 선정위원회 등 농약관리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이 규정 제2장에 농약피해 관련 분쟁조정기구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비의도적 오염 등 농약 관련 분쟁의 해결절차 등 운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거나 또는 별도의 장을 추가해 관련 조항들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
- 기존의 『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농약피해 관련 분쟁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장을 마련해 해당 조문을 신설하는 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개정안)

제3장 농약피해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제1조(목적) 농약피해와 관련한 농업인간의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농업인들 간 선린관계와 건전한 농업 공동체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약피해”란 개인·사업체·기관 등의 농약 사용으로 인해 인근 농업인에게 농작물 오염 등에 의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을 말한다.
2. “농약피해분쟁”이란 농약피해를 둘러싸고 농약 사용자(사용자로 의심되는 경우 포함)와 피해자 간에 벌어지는 다툼을 말한다.
3. “분쟁 조정(調整)”이란 농약피해분쟁에 대해 중조(仲調), 조정(調停), 또는 중재(仲裁)의 방식으로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는 절차를 말한다.
4. “중조(仲調)”는 갈등·분쟁해결 전문가가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서 대화를 통한 상호이해 및 문제해결과정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자발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갈등·분쟁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하는 과정(Mediation)을 말한다. 중조에 의한 합의는 재판상 화해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다.
5. “조정(調停)”은 분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주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조정위원들이 조정안을 제시해 당사자들에게 수락을 권유하는 절차(Conciliation)를 말한다. 당사자들이 모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고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이 불성립된다. 민사조정법상 조정 성립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6. “중재(仲裁)”는 양측 당사자들이 사전 동의에 의해 제3자(중재위원

단)의 결정(중재판정)으로 분쟁을 매듭짓는 절차(Arbitration)를 말한다. 중재법 상 중재는 일종의 단심재판으로서 대단히 강력한 분쟁처리절차다.

7. “다수인관련분쟁”이란 같은 원인으로 인한 농약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5인 이상의 다수(多數)인 농약피해분쟁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약피해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의 해결절차 운영
2. 농약피해와 관련되는 민원의 상담 및 조사연구
3. 농약피해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4. 농약피해의 예방 및 구제와 관련된 교육, 홍보 및 지원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상임위원은 2명 이내로 한다.

- 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임명) ①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농업·농약 및 갈등·분쟁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농촌진흥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다.

1. 1~3급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재직한 사람
4. 농업 또는 농약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농업인단체 또는 농업·농약 분야 협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5. 갈등·분쟁·민원 해결 분야 전문가로서 5년 이상 활동해온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이나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국장과 협의하여 각 분쟁사건의 중조·조정·중재 절차를 담당할 위원 또는 위원단을 선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

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관여한 경우

②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할 조사관들을 둔다.

1. 분쟁의 해결에 필요한 사실조사와 인과관계의 규명
2. 농약피해액의 산정 및 산정기준의 연구·개발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③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을 보좌한다.

④ 위원장은 특정 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를 위촉하여 제2항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분쟁조정 신청) ① 다른 사람이나 기업 또는 기관 등이 살포한 농약으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오염되는 등 피해(이하 “농약피해”라 한다)를 입었다고 보고 분쟁조정을 원하는 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 신청은 별표1에서 정한 양식의 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이뤄지며, 신청서는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에 의해 서면 형태로 접수하거나 위원회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형태로 접수할 수 있다.

제11조(분쟁조정 절차 및 시한) ①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았을 때 지체 없이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는 사실조사부터 시작해, 우선 중조(仲調)에 의해 당사자간 자발적 합의형성을 유도하고, 합의 도출이 곤란한 경우 조정(調停) 또는 중재(仲裁)의 방식으로 분쟁이 원만히 종결되도록 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③ 위원회는 사건을 접수한 후 3개월 이내에 분쟁조정 절차를 완료하도록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사실조사) ① 위원회는 조정신청 사건의 개요와 주요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관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도록 한다.

② 각 분쟁사건에 대한 사실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 등 주요 관련 당사자들의 인적 사항 및 상호관계, 농경지 위치 등
2. 농약피해의 구체적 내용 : 해당 농약 품명과 성분, 피해 농작물과 피해 세부 내용, 전체적인 피해 규모 및 액수 등
3. 농약피해의 책임 소재 및 인과관계의 규명
4. 주요 쟁점사항 및 각 쟁점에 대한 당사자들의 입장, 희망사항 등

③ 조사관은 현장을 방문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그 외 관련된 자들과 주무관청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조사관은 사실조사 후 보고서를 작성해 사무국장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⑤ 조사관은 사실조사 이후 중조·조정·중재 등 분쟁조정 과정에서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중조·조정·중재회의에 출석해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중조·조정·중재위원의 질의에 응답해야 한다.

제13조(관련 기관의 협조) ① 위원회는 분쟁 사안에 대한 사실조사 및 이후 진행되는 분쟁조정과정에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기술적 지식의 제공, 농약 오염물질의 측정 및 분석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거나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제14조(신청의 변경 또는 각하) ①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신청인으로 하여금 애초의 분쟁조정 신청내용을 변경하거나 흠결을 바로잡도록 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적법하지 않은 분쟁조정 신청을 하거나 또는 위원회의 제1항의 요구에 대해 신청인이 타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은 해당 분쟁조정 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제15조(당사자간 합의형성) ①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선 관련 당사자들간 자발적 합의를 유도해 해당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만한 합의형성을 위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사안의 중조(仲調) 절차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중조위원을 3인 이내로 지명한다.

제16조(중조위원의 임무) ① 중조위원은 분쟁 당사자들과의 대화를 진행하면서 쟁점을 해소하고 상생적 해결책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② 제1항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조위원은 편파적인 면 없이 양측 당사자 간에 중립을 지키면서 최대한 원만하고 공정하게 분쟁이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7조(중조절차의 종료) ① 중조과정에서 당사자들 간 합의가 도출되면 중조위원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들의 확인 및 서명을 받고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로써 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된다.

② 중조위원과 당사자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도저히 합의 도출이 힘들 경우 중조위원은 중조과정을 종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중조절차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당사자들에게 다음 절차로서 조정 혹은 중재에 의해 해결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양측 당사자들이 동의하면 조정 혹은 중재 절차로 넘어가고, 그렇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분쟁조정과정을 종료한다.

제18조(조정절차의 개시) 당사자들간 합의 형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1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당사자들이 조정에 동의하면 위원회는 조정 절차를 시작한다.

제19조(조정위원단 구성) ① 조정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단이 주관하여 진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해당 사건의 성격을 감안해 공정성과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조정위원 3명을 선정해 조정위원단을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 3명 중에서 중립적이고 분쟁해결 전문성이 높은 위원을 조정위원단장을 지명하고 조정위원단 및 조정절차를 원활히 이끌도록 한다.

제20조(조정위원단의 의사결정) 조정안 작성을 포함한 조정위원단의 모든 의사결정은 조정위원 전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조정활동) ① 조정위원단은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거나, 또는 조정위원단이 직접 분쟁 현장을 실사하거나 문헌자료를 조사·열람하고 관련 당사자,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단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토대로 상호 합의 하에 공정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들에게 제시한다.

③ 제②항의 조정안을 준비 또는 작성하는 과정에서 조정위원단은 가급적 당사자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내용을 다듬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제22조(조정의 성립) ① 제21조 제②항에 의한 조정안에 대해 당사자들이 모두 수락하면 조정위원단은 소정의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및 조정위원 전원이 서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조서를 당사자 및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고 모든 절차가 종료된다.

제23조(조정의 불성립) 제21조 제②항의 조정안을 당사자 모두 또는 한쪽이 거부할 경우 조정은 불성립하고 해당 사건의 분쟁조정 절차는 종료된다.

제24조(중재절차의 개시) 제15~16조의 중조과정에서 당사자들간 합의 형성이 이뤄지지 않아 제1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당사자들이 모두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에 동의하면 위원회는 중재 절차를 시작한다.

제25조(중재단 구성) ① 중재 절차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단이 주관하여 진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해당 사건의 성격을 감안해 공정성과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중재위원 3명을 선정해 중재단을 구성한다.

단,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중재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재위원 3명 중에서 중립적이고 분쟁해결 전문성이 높은 위원을 중재단장으로 지명하고 중재단 및 중재절차를 원활히 이끌도록 한다.

제26조(중재단의 의사결정) 중재판정문 작성을 포함한 중재단의 모든 의사결정은 중재단 전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중재활동) ① 중재단은 분쟁의 중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거나, 또는 중재단이 직접 분쟁 현장을 실사하거나 문헌자료를 조사·열람하고 관련 당사자,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중재단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토대로 상호 합의 하에 공정한 중재판정을 작성하여 당사자들에게 제시한다.

제28조(중재절차 종료) ① 분쟁의 당사자들은 애초에 동의한 대로 제27조 제②항에 의한 중재판정에 대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수용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재판정문에 당사자 및 중재단 전원이 서명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중재절차가 종료된다.

제29조(중재 불성립 및 종료) ① 중재절차의 진행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중재판정 수용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중재에 대한 불복과 중재의 취소에 관하여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한다.

③ 당사자가 제1항과 같이 할 경우 해당 사안의 분쟁조정절차는 모두 종료된다.

제30조(다수인관련분쟁) ① 5인 이상의 다수인에게 같은 원인으로 농약피해가 발생하여 분쟁조정신청을 할 경우 그 중에서 3인 이내의 대표당사자를 선정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분쟁조정의 효력은 대표당사자 그리고 다수인관련분쟁에 참가를 신청한 자에게만 미친다.

제31조(추가 참가) ① 분쟁조정절차가 이미 진행되는 과정에서 동일한 원인에 의한 농약피해를 주장하는 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당사자로서 추가로 해당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추가 참가자가 5인 이상일 경우 제30조에 의한 다수인관련분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32조(대리인) ① 분쟁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3. 변호사

②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당사자는 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비공개 원칙) ① 위원회가 수행하는 모든 분쟁조정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외적으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분쟁조정과정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조정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사실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34조(조정비용 등) ① 위원회가 진행하는 조정(調整) 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다른 규정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당사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35조(준용규정) 분쟁조정 절차와 관련해 이 규정에 특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사조정법과 중재법, 그리고 환경분쟁조정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7장. [요약·결론] 농약피해 분쟁조정기구의 설치·운영안

□ 농약 분야의 전문적 분쟁조정기구 설치 필요성

- PLS 시행을 계기로 농약 등 농자재 분야에서 벌어져온 국내 및 해외의 분쟁 사례와 유형을 조사·분석하고 효과적인 예방·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대한 저변의 요청이 큰 상태
 - PLS 시행으로 향후 항공방제, 비산 등 비의도적 오염에 따른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유기농산물의 친환경 인증 취소 문제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임(현재 친환경농산물 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매년 약 2,500~3,000건 내외에 달함)
- 잔류농약 검출로 부적합 처분이나 친환경인증 취소처분을 받아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자신의 귀책사유 때문이 아니라 항공방제나 인근 농경지의 농약 비산에 의한 경우, 농약을 살포한 농업인 또는 기업·기관과 피해를 본 농업인 간의 분쟁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음
 - 이에 따라, 비산 농약에 의한 비의도적 오염 등으로 농민들 간의 분쟁이 빈발할 가능성에 대비해 간편하고 효과적인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할 필요성도 갈수록 커지는 추세
- 현재 비의도적 농약오염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국에서 현장지원반을 구성하고 ▷1차적으로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2차적으로 농촌진흥청 고객지원담당관실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PLS 시대에 맞게 적극적으로 분쟁해결 역할을 하는 데는 한계
 - 특히 농약 및 농자재 분야에서 벌어지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 요청됨

□ 농약피해 분쟁조정기구의 기능과 분쟁처리절차

- 분쟁조정 대상 사건 : 특정 개인·기업·기관이 살포한 농약의 비산 등으로 인해 인근 농경지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문제를 둘러싸고 피해를 입은 농업인과 상대측 간에 벌어지는 다툼(이를 “농약피해분쟁”이라 칭함)을 대상으로 하도록 함
 - 잔류농약 검출에 따른 “부적합” 판정이나 “친환경인증” 취소처분 등 공공기관의 행정처분은 본 분쟁조정기구의 처리 대상으로 삼지 않음
- 분쟁조정절차 : 비의도적 오염 등 타인의 농약사용으로 인한 피해 관련 분쟁조정절차는 당사자의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된 후 **사실조사**부터 시작해, 우선 **중조(仲調)**에 의해 당사자간 자발적 합의형성을 유도하고, 합의 도출이 곤란한 경우 **조정(調停)** 또는 **중재(仲裁)**의 방식으로 분쟁이 원만히 종결되도록 하는 순서로 진행
 - 분쟁조정위원회는 사건을 접수한 후 3개월 이내에 분쟁조정 절차를 완료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농약피해 분쟁조정기구의 설치·운영 방안

- 농약피해 관련 전문적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은 우선 그 형태와 위상 면에서 다음 세 가지 안을 고려할 수 있음

[A안] 농촌진흥청 산하 상설기구로 설치·운영

- 농약피해 분쟁조정기구의 설치를 위한 별도의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최상이나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기존의 『농약관리법』을 개정해 분쟁조정기구의 설치근거와 운영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법률적 근거와 효력을 갖는 상설기구로 신설하는 방안이 바람직하고 효과적
- 한국소비자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대다수 조정위원회의 경우와 같

이 일정 수의 상임/비상임 조정위원과 조사관들 그리고 사무국 등 지원 부서를 갖추고 상설 위원회 형태로 운영

- 농촌진흥청 산하에 농자재 관리 분야의 독자적 위원회로서의 위상을 갖도록 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각 지자체 산하 농업기술센터 등 분야별 전문기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고 일하도록 하되, 분쟁해결과정에서 독립성 및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할 필요
- 농촌진흥청 산하에 의무적으로 농약피해 관련 분쟁조정기구(중앙 차원)를 설치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지역 별로 지방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B안] 우선 비상설기구 형태로 출범 후 점진적 확대 및 상설화

- A안과 같이 농약 분야 전문 분쟁해결기구를 가능한 속히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추진이 여의치 않거나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경우를 대비해 “플랜B”로 과도기적 경로를 검토할 필요
 - A안과 유사하게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되, 대부분의 인력을 비상임으로 하여 일종의 심의위원회나 자문위원회와 같이 필요시에만 소집되는 비상설기구로 운영
- 이 경우, 『농약관리법 시행령』 또는 『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농약피해 분쟁조정기구의 설치 근거와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
- 비상설기구로 운영하는 기간에 위와 같은 사무국의 기능은 농촌진흥청의 관련 부서(고객지원담당관 및 농자재산업과)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비상설기구로 운영할 경우 자체 조사관이 없기 때문에, 1) 위원회 주관

하에 사안 별로 해당 분야에서 공정성·신뢰도·권위를 인정받는 기관에 조사·분석 등을 의뢰하거나, 또는 2) 농촌진흥청 또는 각 지역 농업기술원의 관련 부서 직원들이 겸임 형태로 조사관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C안] 대학·전문기관 등에 위탁운영

- 법제도 정비, 인력 충원 등이 당분간 힘들 경우 미국에서와 같이 농약 분야의 전문적 분쟁조정 업무를 대학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대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
- 대학, 연구소 등 수탁기관은 B안에서와 같이 분야별 전문가들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공정하게 구성하고 효과적으로 운영
- 잔류농약 검출, 경로 확인 등 사실관계에 대한 전문적 조사가 필요할 경우 농관원 및 인증기관, 농진청 및 농업기술센터 등의 협조를 받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장치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 일정 기간 민간위탁으로 시범 운영하다가 효과성이 입증되고 현장의 수요도 점차 증가하면 위 A안으로 전환해 추진

□ 비교검토 및 향후 추진 방안

- 위 세 가지 방안의 장단점과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경로는 다음 두 가지 안 검토 가능
 - 1) A안을 소규모로 시작해 점차 효과와 수요를 확인하면서 확대해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거나 또는,
 - 2) 우선 B안으로 시작. 즉, 농촌진흥청 산하에 비상설기구로 ‘농약피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다가 효과가 검증되고 신청사건이 많아지는 등 필요할 경우 상설기구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농약피해 관련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법규를 만드는 일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검토-추진 가능

1. **별도 설치법 제정** : 농약피해분쟁조정기구 설치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

2. **기존 법률 개정** : 농약관리법을 개정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마련. 분쟁조정위 구성·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시행령·시행규칙·운영규정 등으로 규정

3. **대통령령·훈령 개정** : 농약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마련. 분쟁조정위 구성·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농촌진흥청훈령을 개정해 운영규정 마련

○ 결론적으로, 제반 여건과 요인을 감안하고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할 때 농약피해 분쟁조정기구의 설치-운영을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음

- 기존의 농약관리법을 개정해 농약피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마련

- 농약관리법 개정안에는 분쟁조정기구의 설치 및 분쟁조정의 효력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 항목들, 즉 △비의도적 오염 등에 의한 농약피해 관련 분쟁조정기구의 설치 근거 △분쟁조정의 대상 및 범위 △분쟁조정기구의 기능과 권한 △분쟁조정과정에서 관련 당사자 및 공공기관의 의무 등에 대한 조항 등 신설

< 끝 >

<참고문헌>

- 강영진. 2014.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발생지역 갈등조정 연구. 환경부
—— 2009. 갈등해결의 지혜. 도서출판 일빛
—— 2001. 갈등분쟁 해결 매뉴얼. 성공회대학교 출판회
- 박종서. 2017. 친환경농업의 현실과 앞으로의 방향-친환경인증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토론회 발표자료집
- 박태현. 2018. 환경피해 통합구제체계 구축 방안 연구. 환경부
—— 2008.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법적 과제. 환경법연구 vol.30, no.3
- 유병덕. 2019. 친환경농업 정의 개정에 따른 인증제도 개선 방향. 국회토론회 발표 자료집
- 이규승 외. 2017. 주요국의 사례분석을 통한 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 -잔류농약을 중심으로
- 이진숙. 2008. 최근 일본의 소비자행정체계 변화, 소비자정책동향 제1호. 한국소비자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재결례. 친환경농산물 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 (2019.01.08)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안내. <http://ecc.me.go.kr/front/common/information.do>
-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결정사례. 저장성향상 농약 사용 후 과피흑변된 배 배상요구 (2006. 09. 20)
-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안내. <http://www.kca.go.kr/odr/link/bj/br/osBjReqInfoW>
- Albrta FAO. Rural disputes-Suspected spray draft. <https://www.alberta.ca/rural-disputes-suspected-spray-draft.aspx>
- David Kaminski. Manitoba Agriculture, Food & Rural Initiatives, Crops Branch). Pesticide Drift Incidents - Who Takes Responsibility and When?

David Koon, Farmer vs. farmer. 『Arkansas Times』 Aug 10, 2017.

Farmers Advocate Office. Alberta Agriculture and Forestry. Canada.

Lee, Soo-Jeong; Mehler, Louise; Beckman, John; Diebolt-Brown, Brienne; Prado, Joanne; Lackovic, Michelle; Waltz, Justin; Mulay, Prakash; Schwartz, Abby (August 2011). "Acute Pesticide Illnesses Associated with Off-Target Pesticide Drift from Agricultural Applications: 11 States, 1998-2006".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 119 (8): 1162-1169

Maryland Department of Agriculture. Steps in Agricultural Mediation in
MEDIATION INFORMATION SHEET.

Maryland Department of Agriculture. What Happens in A Mediation
Session? in MEDIATION INFORMATION SHEET.

Paul Goeringer. "After Experiencing Drift Damage, What Should You Do?"
on the Website of Department of Agriculture. Maryland
University (2017).

주 의

1. 이 보고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한 “농자재 분야(농약)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 조정기구 설치방안 연구” 사업의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한 “농자재 분야(농약)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조정기구 설치방안 연구” 사업의 연구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